

2023년 학습동아리 활동 결과물

“교육지원청 학생건강업무 워크북”

1권으로 보는

학생건강팀의 **1년**

2023. 10.

[평택6] 보건행정길잡이

▶ 목차 및 업무요약 ◀

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1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보호구역 설정 고시 절차, 점검, 각종업소 파악, 보호구역 점검(학교장 년 2회, 교육지원청 년 1회, 점검사항: 무단설치 업소 현황, 적법해제 업체의 운영 여부 등), 시청 등 유관기관 및 민원인 보호구역 검토 회신, 보고사항 등 | |
| 추진 일정 | 1월 | 보호구역 점검 계획 수립(연중 점검실시)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련 소송현황 보고 |
| | 6월/12월 | 유해환경정비추진 현황보고 |
| | 6월 | 각종업소 현황 보고(☞ 보호구역 점검 시 조사한 업소 현황 및 유관기관 등록 현황조사) |
| | 필요시 | 보호구역 설정 고시(학교 용지시설 결정 및 절대구역 변경 등) |
| | 연중 | 보호구역 해당여부 검토 및 회신(유관기관 및 민원인) |

나. 지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6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보호위원회 구성(위촉/해촉) 방법 · 위원회 운영(심의접수→심의준비(학교장의견, 회의개최 알림, 회의자료 준비 등)→ 위원회 개최→ 결과통보(민원인, 학교, 유관기관)→결과 기록 관리(대장작성 및 보호원 시스템 등록 등) | |
| 추진 일정 | 3월/연중 | ·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자격상실 여부 확인 및 재구성 - 학부모 위원: 매년 운영위원회 여부 등 파악하여 필요시 4월(운영위원회 임기시작)초 변경 - 유관기관: 인사 여부 확인후 변경 - 교육지원청 임명위원: 국장, 과장 인사 이동시 변경 - 지역위원: 임기(2년) 경과 여부 확인후 변경 |
| | 연중 | - (연중) 보호위원회 운영 |

다. 교육환경평가 및 사후관리 -----

8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신설 학교(평가서 내용 검토→ 예정지내 금지시설 현황 조사(유관기관 등록 현황 및 현장 조사) →검토의견서 회신), 기존 학교(평가서 내용 검토 및 의견서 회신), 사후관리 이행절차 | |
| 추진 일정 | 1월 | 계획수립 |
| | 연중 | 사후관리 대상 사업조사 및 점검 실시 |

2

학교 환경위생관리

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리

11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기준, 단계별 조치사항 요약(담당자 지정 및 교육이수, 학생 계기교육 실시, 미세먼지 발생 단계별 대응 및 조치) | |
| |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 전파(메신저 등), 담당자 지정 현황 조사(3월/9월), 담당자 교육이수 현황 조사, 학생계기교육 실시현황 조사(12월), 고농도(경보)발령시 조치결과 보고 등 | |
| 추진 일정 | 3월/9월 | 교육지원청 및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조사 |
| | 3월/11월 | 고농도 계절 사전점검 결과 조사 및 보고 |
| | 12월 | 학생 계기교육 실시현황 조사 |
| | 사안 발생시 | ·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조치결과 보고: 발생후 5일 이내 · 미세먼지 주의보 등 발령시 각급학교 상황전파: 메신저 등 활용 |

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및 유지관리

16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필요성, 공기정화장치 유형, 유형별 장단점 및 기능,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관리 기준, 공기정화장치 관리의 문제점 및 조치사항, 관리실태 점검시 주안점 등 | |
| 추진 일정 | 1~2월 | 전년도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정산(각급학교 대상) |
| | 2월 | 전년도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정산결과 보고 |
| | 3월 | 해당년도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
| | 3월~12월 | 공기정화장치 관리실태 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실시(연중) |
| | 10~11월 | 다음연도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수요 조사 |

다. 학교 석면관리

20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이수 기준, 위해성평가 방법 및 기준,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절차, 나이스 메뉴구성 및 기능 안내, 보수등 유지관리 방법, 관리실태 점검 및 위해성 평가 통합지원(절차 등 요약 정리), 보고사항 등 | |
| 추진 일정 | 1월 | 학교 석면 실태점검 계획 수립 |
| | 3월 | 학교 석면 위해성평가 통합지원 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 |
| | 연중 |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이수 현황 나이스 점검(특히 1월 7월 등 정기 인사시기에 변경 사항 확인) |
| | 연중 | 관리실태점검 |
| | 연중 | 석면건축물 제외승인 현장 확인 및 승인(여름, 겨울 방학중 공사 실시학교에 대해 제외 대상 여부 등 확인 필요) |
| | 연중 | 학교석면위해성 평가 통합지원 |
| | 6월/12월 | 상반기 위해성평가 결과 나이스 등록 및 마감(위해성 평가 접수 이상 여부 확인) |

라.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25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검사대상(저수조,정수기,옥내급수관, 지하수), 먹는물 관리기준, 수질검사 방법, 용역업체 선정기준(자격요건 등), 과업지시서, 입찰 추진 과정 등, 용역사업 추진 실태 점검(점검 주안점 등), 표본수질검사 및 관리 실태 점검 | |
| 추진 일정 | 1월 | 기초조사(필요 수량 등) |
| | 1~2월 |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 점검 계획 수립 |
| | | 수질검사 기관 입찰 사전준비(과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등) 계약심사(1억 이하), 일상감사(추정가격 2억 이상) |
| | 2월 | 품의(계약요청 같음)(우리가 재무과로), 낙찰자 결정 통보(재무과에서 우리로), 계약(우리랑, 재무과랑) |
| | 3월 | 1분기 수질검사 실시(업체에서 학교별 방문) |
| | 4월 | 1분기 수질검사 결과보고(업체→교육지원청→도교육청) |
| | 4~6월 | 2분기 수질검사 실시(업체에서 학교별 방문) |
| | 7월 | 1분기 수질검사 결과보고(업체→교육지원청→도교육청) |
| | 7월~9월 | 3분기 수질검사 실시(업체에서 학교별 방문) |
| | 10월 | 3분기 수질검사 결과보고(업체→교육지원청→도교육청) |
| | 10~12월 | 4분기 수질검사 실시(업체에서 학교별 방문) |
| | 12월 | 예산반납 등 정산보고 |
| | 필요시 | 기성금 지급(업체에서 지급 요청시) |
| 다음년도 1월 | 4분기 수질검사 결과보고(업체→교육지원청→도교육청) | |

마.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31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공기질 관리 기준 및 측정방법, 공기질 측정기관 선정 기준(자격요건 등), 과업지시서, 입찰 추진 과정 등, 용역사업 추진 실태 점검(점검 주안점 등) | |
| 추진 일정 | 1월 | 기초조사(필요 수량 등) |
| | 1월~2월 | 공기질 측정기관 입찰 사전준비(과업지시서 작성 및 검토 등) 계약심사(1억 이하), 일상감사(추정가격 2억 이상) |
| | | 품의(계약요청 같음)(우리가 재무과로), 낙찰자 결정 통보(재무과에서 우리로), 계약(우리랑, 재무과랑) |
| | 2월 | 품의(계약요청 같음)(우리가 재무과로), 낙찰자 결정 통보(재무과에서 우리로), 계약(우리랑, 재무과랑) |
| | 3~6월 | 상반기 공기질 측정(업체에서 학교별 방문) |
| | 6~7월 | 상반기 결과보고(업체→교육지원청→도교육청) |
| | 7~12월 | 하반기 공기질 측정(업체에서 학교별 방문) |
| | 12월 | 예산반납 등 정산보고 |
| | 필요시 | 기성금 지급(업체에서 지급 요청시) |
| 다음년도 1월 | 하반기 결과보고(업체→교육지원청→도교육청) | |

바. 군소음 피해학교 관리 -----

33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군소음 피해학교 기준,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기준, 군소음 피해학교 현황, 피해학교 실태조사 방법 등 | |
| 추진 일정 | 12월 | (전년도) 군소음 피해학교 정산보고(학교회계전출금외 교육청 집행사업비) |
| | 1~2월 | (전년도) 군소음 피해학교 정산보고(학교회계전출금)* 사학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집행지침에 따라 단계별 검토후 지원 |
| | 3월 | 당해연도 군소음 피해학교 예산 지원 |
| | 4월~7월 | 군소음 피해학교 현황 및 다음연도 지원대상 현황 조사 - 실태조사시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병행, 시설공사의 경우 설치년도 등 면밀히 검토 |

사. 학교 매점 및 자판기 위생관리 -----

36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학교 매점관리기준[☞탄산음료, 커피(고카페인음료 판매), 라면, 햄버거빵 등 판매 제한 식품의 판매 여부 및 조치] | |
| 추진 일정 | 3월 | 학교 매점 및 자판기 현황 조사 |
| | 3월~12월 |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
| | 12월 | 학교 매점 점검결과 보고 |

3

학생 건강관리

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발생대응 관리 -----

42

| | | |
|-------|--|---------------------------------|
| 주요 내용 | · 관련 규정, 감염병 종류, 예방접종 관리, 나이스 통계 관리, 결핵등 발생 현황 서면보고(서식 및 절차) 등 | |
| 추진 일정 | 2월 | 감염병 대책반 등 대응계획 수립 |
| | 2월/12월 | 감염병 대응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실적 제출 |
| | 3~5월 | 예방접종 확인 사업(지자체 연계) |
| | 사안 발생시 | 결핵등 긴급한 감염병 발생 서면보고 및 관리 |
| | 연중 |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 검진사업 관리 |
| | 연중 | 나이스 감염병 발생현황 확인 및 제출(신규채용 1개월내) |

나. 흡연예방실천학교 사업 운영 -----

51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사업요약, 흡연예방사업 필요성, 대상교 선정 및 예산교부 등 | |
| 추진 일정 | 1월 | 흡연예방실천학교 선정 및 결과 제출 |
| | 3월 | 흡연예방실천학교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 교부, 현장지원단 구성, 학교별 추진 계획 시스템 입력 관리 등 |
| | 3~12월 | 학교별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및 컨설팅 지원 |
| | 3~4월 | 흡연예방실천학교 설명회 개최 |
| | 12월 | 흡연예방실천학교 실적 입력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 | 12월 | 각급학교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정산 보고 |
| | 12월 | 흡연예방실천학교 우수사례 발표회 등 개최 |
| | 12월 | 다음연도 흡연예방실천학교 사업계획 등 희망 조사 |

다.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 -----

55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 개요 요약, 검사지, 업무 흐름 등 | |
| 추진 일정 | 2월 | 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안내 |
| | 3월 |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 4월 | 정서행동특성검사(1차) 실시(각급학교) |
| | 5월 | 정서행동특성검사(1차) 결과 마감 및 제출(나이스) |
| | 5~10월 | 정서행동특성검사 전문기관 연계 |
| | 11월 | 정서행동특성검사 조치결과 보고(나이스) |

라. 학생 건강검사 등 -----

58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학생건강검사 실시 추진 개요 요약, 관련 서식, 업무 흐름, 건강검사 표본학교 운영,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등 | |
| 추진 일정 | 2월 | 학생건강검사 실시 계획 수립 및 안내 |
| | 3월 | 검진기관선정완화 검토 및 승인 |
| | 8월 | 학생 신체의 발달상황 통계표(나이스 보고) |
| | 12월 | 학생건강검사 추진현황 보고(업무관리시스템) |

마. 학교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

62

| | | | |
|---------------------|---|--------------------------|--|
| 주요 내용 | · 관련규정, 보건교육, 성교육, 응급처치교육, 흡연 등 약물남용 예방교육, 요보호학생관리, 보건교육거점학교 및 건강공감학교 운영 등 업무 요약, 업무 흐름 등 | | |
| 추진 일정 | 1월 |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 |
| | 8월 | 학생 신체의 발달 상황통계 | |
| | 12월 |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보고 | |
| | | 보건교육 실시 및 교과 선택 현화 보고 | |
| | | 성교육 실시현황 보고 | |
| | |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실시 현황 제출 | |
|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 운영실적 제출 | | | |

바. 학생건강, 환경위생 관련 표창 -----

66

| | | |
|-------|-----------------------------------|-----------------------------|
| 주요 내용 | · 업무처리 절차,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유의(확인)사항 등 | |
| 추진 일정 | 10~11월 | 도교육청 계획에 따른 유공자 및 우수교 표창 추천 |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관련 규정 및 지침

○ 관련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 ❖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 (교육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 관련지침: 학교 환경위생관리 기본계획

가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고시

① 보호구역의 설정고시 대상

○ 학교 설립예정지

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 용지)

나. 유치원, 특수학교,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용지

(※ 사립유치원, 사립특수학교, 사립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

○ 학교 경계선 및 출입문 등 보호구역 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② 보호구역의 설정고시 절차

①(교육지원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홈페이지)에 도면제작 의뢰* → ②(보호원)접수 후 도면 제작 → ③(교육지원청)도면 검토(절대 및 상대구역, 지적 경계선, 오탈자 등) → ④(교육지원청) 설정고시(업무관리시스템 내부결재: 고시문 및 도면 첨부) → ⑤(교육지원청) 고시사항 알림(고시문, 도면 홈페이지 게시) → ⑥(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보호원에 설정고시 알림 공문 시행[고시문, 도면(토지이음터 등재용 연속지적도 포함)첨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홈페이지 등록 절차>

(상단) 보호구역 - 설정고시 - 새고시등록 - (고시형태) 예정, 신설, 변경, 해제 중 선택 - (학교정보) 학교명찾기 - (등록요청정보) 설계도면 dwg 또는 pdf 등 파일 첨부

※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설정·고시(「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 (중요) 학교용지 시설결정 고시여부에 대해 교육지원청 배치담당부서에 수시 확인하고 고시가 된 경우 학생건강담당 부서에 통보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및 관리

1] 보호구역 점검 대상

○ 보호구역 관리자(학교장)

가. 점검 시기: 반기별 1회 이상

나. 점검 사항: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등

※ 위반행위(시설) 적발시 교육지원청에 서면 또는 유선 보고

다. 점검결과 작성 보관: 별지서식 참고

라. 점검결과 보고: 유해환경정비추진 실적 제출(6월, 12월) ☞ 보고서식 참조

○ 보호구역 설정자(교육장)

가. 점검 대상 및 시기: 연 1회 이상 보호구역 설정 고시된 모든학교

나. 점검계획 수립: 매년 1월 중 자체 점검계획 수립

다. 점검 사항: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출입문 및 경계선 등 보호구역 변경요인, 보호구역 알림 표지판 설치여부 등 조사

※ 위반행위(시설) 적발시 관계행정기관(시·군청) 등에 처분 및 시설물 철거 명령 요청 또는 수사기관(경찰서)에 고발 등 조치

※ 보호구역 변경사항 확인 시 재설정 고시 추진

라. 점검결과 작성 보관: 별지서식 참고

마. 점검결과 활용 및 보고

▶ 보고서식: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 추진현황(교육부 서식)

▶ 보고방법: 업무관리시스템

▶ 보고시기: 연 2회(매년 6월, 12월)

※ 보고일 이전 각급학교의 점검실적 등 취합(자료집계 등 활용)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대장

관리자(학교)용

| 점검 일자 (년월일) | 점검 결과 | 위반업소 적발 현황 | | | | | | 비 고 | 결 재 | | |
|-------------------|----------|------------|-----|-----|---------------|---------------------------------|----------|-----|-----|-----|-----|
| | |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학교와의 거리(m) | 위반 사항 (교육환 경 저해 내용) | 조치현 황 |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설정자(교육지원청)용

| 보호구역 학교명 | 점검 일자 | 위반업소 적발 현황 | | | | | | 비 고 | 결 재 | | |
|-------------|----------|------------|-----|-----|---------------|---------------------------------|-----------|-----|---------|-----|-----|
| | |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학교와의 거리(m) | 위반사 항 (교육환 경 저해 내용) | 조치 현 황 | | 담당 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보호구역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조사

○ 적법 해제시설(☞ 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 설치 운영중인 시설)

가. 조사방법

▶ 보호구역 점검시 운영 중인 시설 현황조사(상시)

▶ 시·군청 등 인허가 기관에 등록 또는 신고된 시설 현황을 받아 조사

나. 보고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다. 보고시기: 연 1회(매년 6. 30.기준)

○ 불법 금지시설(☞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설치된 시설 또는 보호구역내 설치 불가능한 절대 금지시설)

가. 조사방법

- ▶ 보호구역 점검시 불법 설치된 시설 현황조사
- ▶ 경찰서 단속시 통보된 불법 금지시설(특히, 불법 마사지 업소 등)

나. 보고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내 적법 해제시설 및 불법 금지시설 현황

다. 보고시기: 연 1회(매년 6. 30.기준)

□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 여부 확인 및 회신

① 보호구역 해당여부 확인

○ 확인 절차

- ① (보호원)교육환경정보시스템 확인 → ② (국토부)토지이(e)음(토지이용계획) 시스템 확인

☞ 필요시 네이버, 다음 등 민간 시스템 추가 확인

※ (중요) 반드시 동 시스템에 보호구역 설정고시 현행화 유지

○ (시스템 활용 예시)

구분

예시

①

교육환경보호시스템(<https://eeis.schoolkeepa.or.kr/gis/gis.do>)

The screenshot shows the '토지이(e)음' (Land Information) web application. The search results for parcel No. 566-13 in Seogyong-dong, Gyeonggi-do are displayed. The table below summarizes the key information from the interface:

| 소제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6-13번지 | | |
|------------|---|---|--|
| 지목 | 대 | 면적 | 203.8 m ² |
| 개발공시지가(㎡당) | 1,222,000원 (2023/01) 면도보기 | | |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세교택지지구), 소로2류(폭 8m-10m)(집합) | |
| |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 가족사육제한구역(2022-01-26)(전부제한구역)<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아이돌전문국유지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 |
| 확인도면 | | | |
| | | 범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법정동 중로1류(폭 20m-25m) 소로2류(폭 8m-10m) |

토지이(e)음 (<http://www.eum.go.kr/web/am/amMain.jsp>)

② 보호구역 해당여부 회신

○ (공문 회신) 유관기관에서 공문으로 요청한 경우

○ (유선 회신)

- 민원인이 전화로 문의한 경우 통화를 하면서 보호구역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바로 회신하지 말고, 가급적 ①업종, 주소, 연락처 등을 메모한 후 ②전화를 끊고, ③보호구역 해당여부를 위의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회신

※ 가급적 민원 상담대장(업종, 주소, 통화일시, 통화내용 등 기재)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나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구성

1 지역위원회 구성 기준

- (위원 정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이상 17명 이하
- 위원 구성

| | | |
|-------------|-------------|--|
| 당연직 (임명) | 소속 직원 | - 국단위(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 과단위(사무를 담당하는 과장) |
| 위촉 | 관련기관 공무원 | - 시·군·구 및 경찰서 공무원* * 보호구역내 금지시설 인허가 및 단속 등 관련부서 공무원 |
| | 학부모 |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 (중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 |
| | 지역사회 전문가 | -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2 지역위원회 임기

- (당연직 위원)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위촉 위원)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 | |
|------|--|
| 자격상실 | - (관련기관 공무원) 인사발령 등 그 직위를 상실한 때 -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자격*을 상실한 때 *매년 4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시 자격상실 여부 확인 필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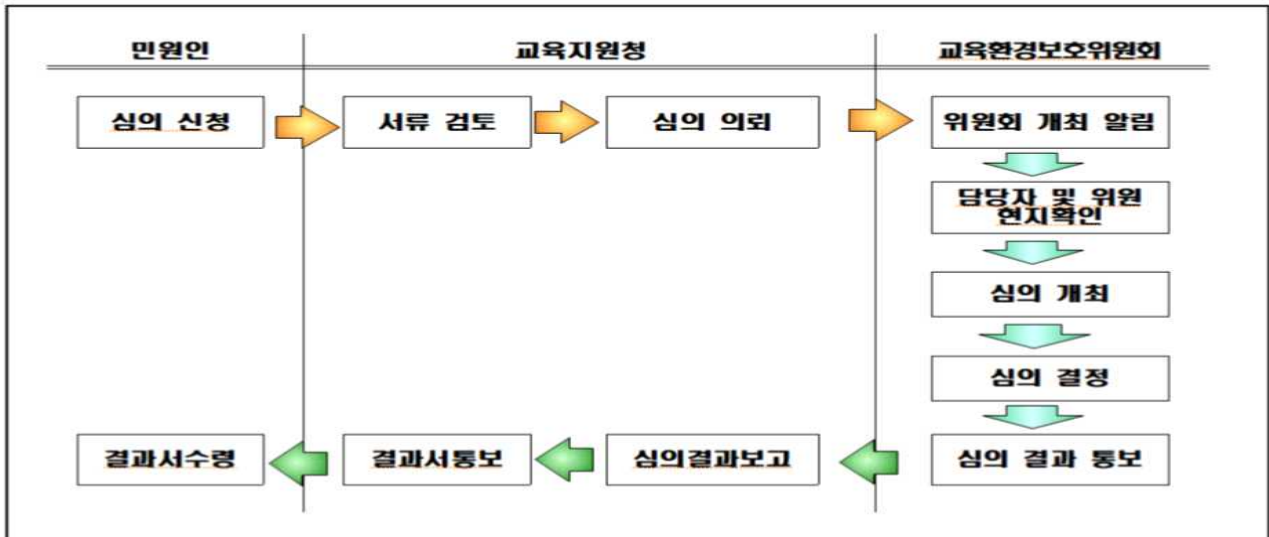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기능

| | |
|--------------------------------|---|
| 교육환경 평가서 승인 | - 유치원만을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 대안학교만을 설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 - 대학의 일부를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안으로 위치 변경하는 경우 |
| - 교육환경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 |
| - 교육환경평가 승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 |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을 명령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① 지역위원회 업무처리 절차



② 업무처리 절차 중 중점 확인사항

- (심의 신청시) 신청하는 업종 및 소재지를 명확히 작성토록 안내
- (학교장 의견) 해당 안전에 대한 주통학로 여부, 가부 의견 등이 명확히 작성되도록 함
- (담당자 현지확인) 학교와의 위치(보이는 지), 동일 건물 및 보호구역내 동일업종 등 심의현황, 학생들의 통학 등 면밀히 조사
- (위원회 개최시)
 - 성원을 위한 참석위원(의사 정족수: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안전에 대한 의결정족수(참석위원의 2/3이상 찬성) 확인
 - 등록부, 의견(결)서 등에 위원별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심의결과 통보) 신청인 및 학교, 유관기관에 심의결과 통보
- ※ 심의 해제건중 학교장 의견이 반대인 경우 반드시 재심의 의견 조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5항)
- (대장 작성 및 시스템 등록) 심의결과 대장에 기록 관리 및 한국교육환경 보호원의 보호구역관리시스템에 결과 등록)

다 교육환경평가 및 사후관리

□ 교육환경평가 검토사항 및 의견작성

① 교육환경평가 개요

○ 대상

-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하가교는 제외한다) 또는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의 건축을 하려는 자(※ 21층이상,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교육지원청 학생배치담당) → 평가서 검토 의견 조회(학생배치담당 → 각부서, 교육환경보호원) → 의견취합 및 검토(학생배치담당) → 심의 요청 및 검토의견 제출(학생배치담당 → 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② 교육환경평가 검토의견 작성 예시 (학생건강팀 소관사항)

| 대항목 | 소항목 | 세부항목 | 검토 의견 작성요령 | |
|----------|-------|---|--|--------------------------------------|
| | | | 신설학교 | 기존학교 |
| 대기 환경 | 대기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 초과 시설 2) 「악취방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설 | - 평가서 내용 확인 및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시설 존재 여부 등 검토 | - 평가서 상의 해당 시설의 기준 초과 여부 및 방지대책 등 확인 |
| | 소음·진동 |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 초과 시설 2)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 적합 시설 3) 교사내 소음기준 55dB 이하일 것 | - 평가서 내용 확인 및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시설 존재 여부 등 검토 - 교사내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사항 등 기재 | - 필요시 추가방지 대책 요구 |

| | | | | |
|----------|--------------------------------|---|---|---|
| 주변 환경 |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행위 및 시설 | - 평가서 내용 확인 및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시설 존재 여부 등 검토 ※ 상대적 금지시 설의 경우 보호위원 회 심의결과 반영 | - 해당 시설에 금지행위(시설) 존 재 여부 확인 및 설치 불가 안내 |
| | 위험요소 및 시설 | 1)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악취배출시설 4) 공항,철도, 고가도로, 터미널, 고압송전선로, 송전탑 5) 경마장,장외발매소, 경주장, 장외매장 6)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소 등 7) 변전소, 주유소 등 | - 평가서 내용 확인 및 유관기관을 통해 해당시설 존재 여부 등 검토 | |

□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 (목적) 교육환경평가의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여부 등 확인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안전 및 학습환경 보호
- (대상) 교육환경평가 승인을 받은 사업지(장)
- (내용) 교육환경평가 승인 내용 및 권고 이행사항 조사
- (조사방법) 자료분석, 사전(서면)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 자료분석: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사항 등 확인
 - 사전조사: 공사 추진 현황(공정표 등), 승인내용 이행현황 조사
 - 면접조사: 학교 대상 교육환경 피해조사 및 공사관계자 인터뷰
 - 현장조사: 공사현장 방문하여 이행현황 조사(이행여부, 변경사항 등)
- ※ 필요시 소음 등 환경측정
- 사후관리 조사팀 구성
 - 주관: 학생건강팀 / 협조: 통학안전, 학생배치, 시설담당 등 관련부서
- (조사결과 보고) 조사 결과 이행여부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해 보고
 - ※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필요시 개선명령 및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명령)

학교환경위생관리

2. 학교 환경위생관리

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관리

□ 관련 규정 및 지침

○ 관련법: 「학교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특별법」

- ❖ (공기정화설치 등 설치) 「학교보건법」 제4조의3
-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학교보건법」 제5조
-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 (대기오염도 예측·발표)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
- ❖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 ❖ (취약계층의 보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관련지침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 학교 대기오염 대응매뉴얼

□ 용어 정의

- ❖ (미세먼지)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₁₀)
- ❖ (초미세먼지)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PM_{2.5})
- ❖ (미세먼지 예보)
환경부가 지역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알려 국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권역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저감 조치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제 및 경보제 기준

1] 미세먼지 예보제 기준

| 구 분 | | 등 급($\mu\text{g}/\text{m}^3$) | | | |
|----------|----------------------------|---------------------------------|-------|--------|--------|
|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예보 물질 | 미세먼지(PM_{10}) | 0~30 | 31~80 | 81~150 | 151 이상 |
| | 초미세먼지($\text{PM}_{2.5}$) | 0~15 | 16~35 | 36~75 | 76 이상 |

2]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 미세먼지 경보 권역 (경기 4개 권역)

- (남부권) 용인, 평택, 안성, 이천, 여주
- (중부권) 수원, 안산, 안양, 부천, 시흥, 광명, 군포, 의왕, 과천, 화성, 오산
- (북부권)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 (동부권) 남양주, 구리, 광주, 성남, 하남, 가평, 양평

○ 미세먼지 경보단계

| 대상 물질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
| 미세먼지 (PM_{10})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_{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mu\text{g}/\text{m}^3$ 미만인 때 |
|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_{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_{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초미세 먼지 ($\text{PM}_{2.5}$)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text{PM}_{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text{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mu\text{g}/\text{m}^3$ 미만인 때 |
|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text{PM}_{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text{PM}_{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 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 단계 | 대응요령 |
|---|--|
| <p>평시 사전준비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 대체를 위한 사전계획 마련 담당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하여 숙지하고, 보호자 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관리대책 마련 보건용 마스크, 상비약(안약, 아토피연고, 인헤일러 등) 비치 및 점검 등 |
| <p>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 <p>고농도 발생 PM₁₀ 81이상 또는 PM_{2.5} 36이상 1시간 지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학생 대상 행동요령* 교육 및 실천 ※ 실외활동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실외수업(활동) 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학생 관리대책 이행 실내공기질 관리(공기정화장치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 <p>비상 저감조치 PM_{2.5} 주의보 수준과 유사</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교일 전날, 시·도지사 권고 또는 시·도교육감 휴업명령 등을 참고하여 휴업 또는 등하교(원)시간 조정을 실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협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국공립학교만 해당) |
| <p>주의보 PM₁₀ 150이상 또는 PM_{2.5} 75이상 2시간 지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유치원·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 <p>경보 PM₁₀ 300이상 또는 PM_{2.5} 150이상 2시간 지속</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돌봄 교실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유치원·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

□ 미세먼지 대응 학교에서 해야 할 일

1 평시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 (담당자) 미세먼지 담당자 및 대리근무자 지정
- (교육이수)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후 2년마다 1회 이상
- (문자신청 등)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등) 설치 및 알람 문자 신청

○ 학생 보호조치 방안 마련

- (학생계기교육) 미세먼지 빈발시기 전 또는 신학기 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행동요령, 미세먼지 위해성 등의 학생교육 실시
- (응급조치사항 숙지)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보유 학생 현황 및 질환별 조치사항 숙지
- (가정통신문 안내) 학기 초 미세먼지 대응관련 사항 및 질병결석 인정 등을 위한 의사소견서 등 관련서류 제출 안내

○ 공기정화장치 운용 등 실내공기질 관리

- (정기점검) 공기정화장치 주기적 점검 등 유지·관리 기준 숙지
- (수시환기) 환기요령 숙지하여 적정 환기 유지
- (미세먼지 측정기) 환기정화설비 부속품 또는 간이 측정기기 구비(2대 이상)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의보/경보 발령)

○ 학교 대응계획 실시

- (상황전파) 담당자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및 학교내 전파
- (학사운영) 실외 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학사운영 조정 검토 적용

○ 학생 건강상태 파악 및 지원 조치

- (건강관리)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 등
- (가정통신문 안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상황 및 대응요령 안내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조치결과 보고 (발생 후 5일 이내)

□ 미세먼지 대응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

1 평시

- 미세먼지 담당자 관리
 - (담당자 파악)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정·부 현황 파악 및 관리(3월/9월)
 - (교육이수 안내)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안내 및 이수 독려

- 미세먼지 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 점검
 - (모니터링)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등을 통한 미세먼지 상황 관리
 - (대응체계) 학교 및 관계기관 비상연락 대응체계 구축

- 공기정화장치 운용 등 실내공기질 관리
 - (점검실시) 공기정화장치 작동상태 및 필터 교체 등 정기·수시점검
 - (컨설팅) 공기정화장치 운용 및 교실내 미세먼지 관리 컨설팅 지원

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주의보/경보 발령)

- 학교 조치사항 확인 및 대응상황 모니터링
 - (상황전파)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사항 각급학교 전파
 - (조치파악) 등·하교 시간 조정, 수업단축 및 임시휴업 등 조치확인 파악
 - ※미세먼지로 인한 등·하교시간 조정 또는 임시휴업 시 초·중·고등학교(유치원 방과후 과정 돌봄) 및 휴업대체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함

- 학생 건강관리 조치 지원
 - (학사지원) 실외 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학사운영 조정 검토
 - (건강지원)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자 학생 및 교직원 건강관리 지원
 - (민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민원 대응

-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조치결과 파악 (발생 후 5일 이내)

□ 관련 규정 및 지침

○ 관련법: 「학교보건법」

- ❖ (공기정화장치 등 설치) 「학교보건법」 제4조의3
-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관련지침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 학교 대기오염 대응매뉴얼

□ 추진배경 및 용어정의

- ❖ 대기오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및 ‘황사’ 등의 영향으로 교실 자연환기가 어려워지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교실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취약한 학생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으로 교실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추진
- ❖ 공기정화장치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계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를 총칭
 - (기계환기설비) 오염물질 제거장치(필터)를 거쳐 외부 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고, 오염된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환기시설
 - (공기청정기)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
 - ※ 외부 공기 ‘나쁨’으로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 가동 시 교실내 미세먼지 제거 가능하나, 학생 호흡에 따른 이산화탄소(CO₂) 증가로 호흡곤란, 두통 등의 인체영향이 발생 할 수 있어 필터를 거친 외부 공기를 교실에 유입할 수 있게 환기설비를 추가 가동하여 더욱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가능
 - ※ 그린스마트학교, 학교 건축물 구조 등의 상황을 검토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

□ 공기정화장치 설치 유형

① 사업추진 추진경과

- (2019년) 모든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의무화 「학교보건법」
- (2020년) 일반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및 임대
- (2021년) 일반교실 환기설비 추가 설치(기준: 공기청정기만 설치된 일반교실에 환기설비(400CMH) 설치)
- (2022년) 특별교실 공기청정기 설치 및 임대

② 공기정화장치 유형

| 구분 | 환기설비 (=공기순환기, 전열교환기) | | 공기청정기 | |
|------------------|--|--|--|--|
| | 천장형 | 바닥상치형/ 스탠드형 | 벽걸이형/ 스탠드형 | 천장형 냉난방키트 |
| 기능 |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외부의 공기를 필터를 거쳐 실내로 유입 [기기설치 위한 공사기간 소요] | | 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기기에 부착된 필터를 통해 제거(내부순환) [별도공사 없이 임대 또는 구입가능] | |
| 기준 용량 (1실당) | 800m ³ /h * 1대 (36명*21.6= 778m ³ /h) | 400m ³ /h * 2대 (36명*21.6= 778m ³ /h) | 100m ² 이상 * 1대 (66m ² *1.5배=100m ²) | |
| 설치형태 | 학교 산·증축 시 설치 (기존 학교도 천장속 공간 확보시 가능) |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시 설치 (기존 학교는 천장속 공간 확보 곤란) | 공기정화장치 설치사업 시 설치 (학교여건에 따라 설치유형 선택가능) | 2018년 이후 산·증축 및 난방개선 시 설치 |
| 설치비 (실당) | 4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 60만원 |
| 유지관리비 (연간·실당) | 40만원 | 40만원 | 렌탈시 40만원 구입시 30~40만원 | 30~40만원 |
| 유지관리 방안 | 설치 후 용역계약 | 설치 후 용역계약 | 렌탈(유지관리포함) or 구입 후 용역계약 | 설치 후 용역계약 |
| 사진1 |  천장형(천장속 설치) |  바닥상치형 |  벽걸이형 |  냉난방키트 |
| |  천장 점검구 |  스탠드형 |  스탠드형 |  냉난방키트 |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기준

① 교육부 기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교육부 2021.8.12.발표)

| 유지관리 항목 | 세부 작업내용 | 관리 주기(안) |
|---------------------------------|--|----------------------|
| 점검 및 청소 | 평상시 공기정화장치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청소 | 1~2개월 (프리필터의 청소) |
| 세부 성능점검 | 필터의 오염 및 손상여부 등 점검 후 필요시 필터교환 | 3~6개월 (미디움 필터 이상) |
| 주요 부품 (송풍기, 열교환소자 등) 성능점검 | 풍량 및 내구성 저하 등의 점검후 부품 교환여부 판단 | 2년 |
| 유로 또는 덕트 등의 관리상태 점검 | 누기 점검 및 유로 또는 덕트내부의 청소여부 판단 | 3~5년 |

※ 공기정화장치의 종류 및 학교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관리

② 경기도교육청 기준(2023년)

■ 공기청정기

- 매월 점검·청소 10회/연(방학기간 제외), 필터 교체 2회/연

■ 환기설비

- 매월 점검·청소 10회/연(방학기간 제외), 필터 교체 1~2회/연
- *필터 기준 : 미세먼지포집률 95% 이상
- 열교환소자 : 5년마다 교체 권장(순차적 교체 필요_매년 1개 층씩 교체 등)

■ 냉난방 공기청정키트

- 매월 점검·청소 10회/연(방학기간 제외), 분해세척조립 2~4회/연
- *필요시 : 프리필터 교체 1회/연, 실내기 분해세척조립 1회/연

※ 학교의 실·내외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관리

☞ 학교의 업무경감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업체와 연간 유지관리 용역 (점검표 작성 포함) 계약 권장

③ 경기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공기정화설비의 점검등) [본조신설 2020.11.12.]

- 공기정화설비의 필터 교체, 청소 등 점검을 연 2회이상 실시
- 필터교체시 확인 사항(2가지 모두)
 1. 필터 시험성적서(필터 원단 제조업체 또는 필터 인증시험기관을 통해 발급된)
 2. 필터에 각인 또는 포장재에 표시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등
-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연 2회 이상), 점검일자 등 점검내역을 기록 관리

□ 공기정화장치 관리실태 점검

1] 학교에서 해야할 일

○ 공기정화장치 현황 관리

- 교실별 설치유형, 위치, 유지관리 업체, 필터 교체 주기 등 관리

○ 매월(년 10회) 유지관리 점검 실시

- 학교 자체 또는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 정기 점검 실시
- 유지관리 업체 점검 및 필터 교체 시 학교 담당자 입회 관리상태 확인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서식(교육부 안내서) 매월 누적 작성 및 관리
- 공기정화설비 점검결과 학교 홈페이지 공개

2] 교육지원청에서 해야할 일

○ 공기정화장치 학교 유형별 현황 관리

| 학교명 | 교실 수 | | | 설치 유형 | | | 세부 현황 | | |
|-----|------|----|----|----------|-----------|--------------|-------|------|-------|
| | 일반 | 특별 | 계 | 환기 설비 | 공기 청정기 | 환기설비 +청정기 | 설치유형 | 업체명 | 용량 |
| 00초 | 10 | 8 | 18 | 6 | 2 | 10 | 바닥상치형 | 00화학 | 400*1 |

○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통합입찰

- (10월)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수요파악
- (11월)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 (12월)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통합입찰 계약 요청
- (1월) 개별 학교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 계약 실시

○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비 지원

- (1월)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임대 및 유지관리비 수요현황 파악
- (3월) 공기정화장치 임대 및 유지관리비 교부 / (다음해 1월) 정산보고

○ 학교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정기·합동점검 실시 (월 3개교 이상)

○ 「중대대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점검

- 유지관리 용역 과업지시서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 작업장 순회점검(주 1회 이상), 합동점검(분기 1회 이상) 실시
-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매월 1회 이상 운영

※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등은 제외

□ 관련 규정 및 지침

○ 관련법: 「석면안전관리법」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석면안전관리법」 제24조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_환경부 고시」

▶ 관련지침: 학교석면 관리 매뉴얼

□ 학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교육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변경 신고 방법: 나이스시스템
 - 최초신고: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제출 시 신고
 - 변경신고: 인사이동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10일 이내에 신고
- ※ 나이스시스템 추가등록(기 등록 삭제 금지)
- (나이스-학교환경-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관리-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등록)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 구분 | 시기 | 시간 |
|------|--|-----|
| 신규교육 | 신고 또는 변경신고(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한하여 적용)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8시간 |
| 보수교육 |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 4시간 |

※ 교육부 위탁 교육기관(2023년 7월 기준): 선문대학교,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석면환경협회, 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돌봄이앤씨

□ 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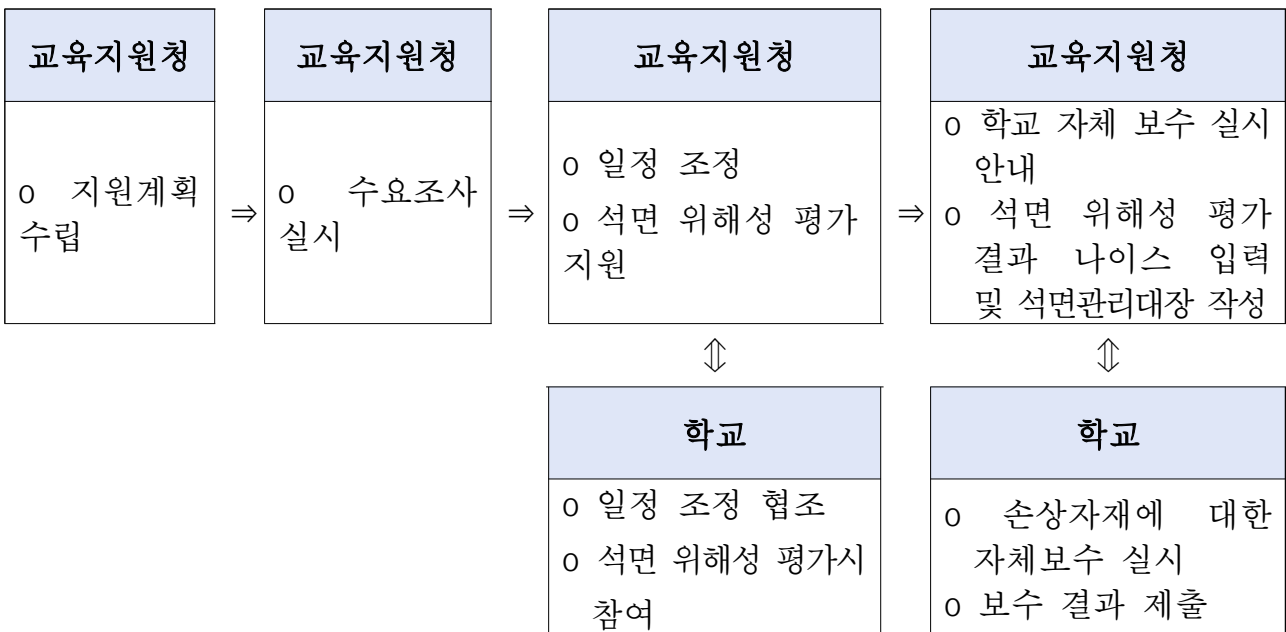
① 석면 위해성평가(학교자체 실시)

- 주체: 석면건축물 소유자 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 수행
- 대상: 석면건축자재로 분류되어 관리중인 건축자재(석면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석면 건축자재)
- 시기: 매년 6개월 마다(6월, 12월)
- 방법: 환경부고시(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_붙임1)에 따라 실별 실시 후 관리대장 기록 및 나이스 입력

② 석면학교 위해성평가 지원(교육지원청 지원 사업)

- 대상: 관내 석면 해당학교 중 희망교
- 시기: 상·하반기 각 1회
- 방법: 석면건축물 학교 상·하반기 위해성평가 현장 지원

<업무 절차>



□ 학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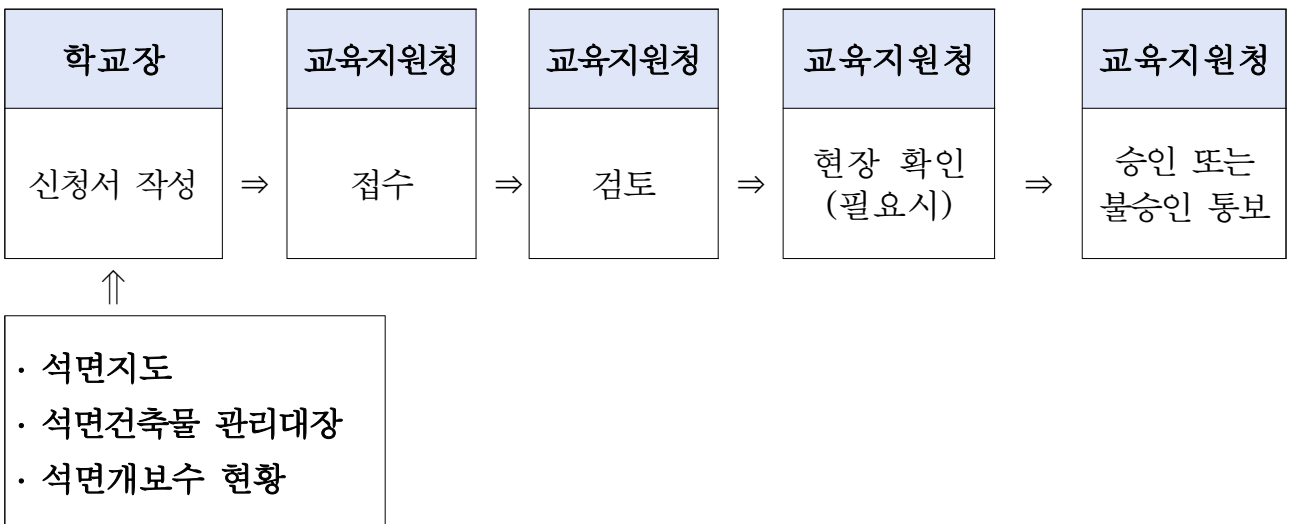
1 석면건축물 제외 신청

- 대상: 석면건축자재 철거 또는 학교의 이전 등으로 석면건축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학교
- 제외 신청자료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석면지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석면개·보수 현황 등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검토 및 통보

-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 해당 학교 현장을 확인(석면 의심구역 존재여부 등)
 - ※ 필요시 전문조사업체 관계자를 동행토록 하는 등 무석면 학교 인증절차 강화

<업무 절차>



[참고자료]

위해성 평가 점수 및 조치방법 [환경부고시 제2020-156호, 2020.7.14.시행]

| ○ 위해성 평가 점수 기준 | | | |
|--------------------------------------|----------------------------------|---|----|
| 물리적 평가 | - 손상상태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 없음 | 시각적으로 전혀 손상이 없거나 손상을 보수한 경우 | 0 |
| | 낮음 |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미만으로 미미한 손상이 있는 경우 (예: 균열, 깨짐, 갈라짐, 구멍, 절단, 틈새, 벗겨짐, 들뜸 등) | 2 |
| | 높음 | 손상면적이 전체의 10% 이상으로 육안상 뚜렷한 손상이 있는 경우 | 3 |
| | - 비산성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 없음 | 손상 상태가 “없음” 인 경우 | 0 |
| | 낮음 | 손상되어 부스러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손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예: 바닥재, 배관재 지붕재, 천장재, 벽체재료, 칸막이 등) | 2 |
| | 높음 | 손상된 분무재, 단열재, 보온재, 내화피복재 | 3 |
| | - 석면함유량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20%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 함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 1 | |
| 20%이상 40%미만 | 건축자재의 석면 함유율이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 | 2 | |
| 40%이상 | 건축자재의 석면 함유율이 40% 이상인 경우 | 3 | |
| 잠재적 손상가능성 평가 | - 진동에 의한 손상 가능성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 | 낮음 | 모터나 엔진이 있지만 거슬리는 소음이나 진동이 없는 경우 또는 간헐적으로 큰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예: 선풍기, 에어컨 등의 작은 모터가 석면 건축자재에 설치된 것, 공조 덕트 등에 진동이 있지만 해당 구역에 팬이 없는 경우 또는 음악실) | 1 |
| | 높음 | 큰 모터나 엔진이 있으며, 방해적인 소음 또는 쉽게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예: 공조실, 기계실 등) | 2 |
| | - 기류에 의한 손상 가능성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 | 낮음 | 약한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예: 환기구, 선풍기, 에어컨, 공조 송풍구 등 유사 설비가 설치된 경우) | 1 |
| | 높음 | 빠른 공기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경우 (예: 엘리베이터 통로, 환기 및 급기 팬이 설치된 지역) | 2 |
| | - 누수에 의한 손상 가능성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없음 | 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
| 손상 | 누수에 의한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명확한 경우 | 2 | |
| ※ 누수의 흔적만 있고 육안상 손상이 없는 경우에도 손상으로 판단 | | | |

○ **위해성 평가 점수 기준**

| | | | |
|-----------------------------|-------------------|--|----|
| 건축물 유지보수에 따른 손상가능성평가 | - 유지 보수 형태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 없음 | 유지·보수 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는 경우 | 0 |
| | 낮은 교란 | 직접적으로 석면건축자재를 접촉하지 않지만 교란을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예: 석면 천장재에 설치된 전구를 교체하는 행위) | 1 |
| | 보통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경우(예: 천장 위에 설치된 밸브 등을 점검하기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 장 정도를 들추는 행위) | 2 |
| | 높은 교란 | 유지·보수를 위해 석면건축자재를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경우 (예: 밸브 또는 전선 설치를 위해 석면 천장재 한두장 정도를 제거하는 행위) | 3 |
| | - 유지 보수 빈도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 없음 | 없음 | 0 |
| | 낮음 | 1년에 1회 이하 | 1 |
| 보통 | 한달에 1회 이하 | 2 | |
| 높은 | 한달에 1회 초과 | 3 | |
| 인체노출 가능성평가 | - 사용인원 수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 낮음 | 거의 없음(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 | 보통 | 10인 미만 | 1 |
| | 높은 | 10인 이상(예시: 일반 교실) | 2 |
| | - 구역의 사용 빈도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 낮음 | 부정기적(아래의 상황이 없는 경우) | 0 |
| | 보통 | 매주 사용(주 3회 미만) | 1 |
| | 높음 | 매일 사용(주 3회 이상)(예시: 일반 교실) | 2 |
| - 구역의 1일 평균 사용 시간 | | | |
| 등급 | 판단기준 | 점수 | |
| 낮음 | 1시간 미만 | 0 | |
| 보통 |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1 | |
| 높음 | 4시간 이상(예시: 일반 교실) | 2 | |

○ **위해성 평가 후 조치 방법**

| | | |
|----|-------|--|
| 높음 | 20이상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손상이 매우 심한 상태> 1) 해당 건축자재를 제거. 다만, 제거하지 않고도 인체영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있다면 해당 구역 폐쇄 또는 해당 건축자재 밀봉 2) 보온재의 경우, 보온재를 완벽하게 보온할 수 있다면 보수 3) 제거가 아닌 폐쇄, 밀봉 또는 보수한 경우 해당 건축자재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및 격리조치 |
| 중간 | 12~19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는 상태> 1) 손상에 대한 보수 2) 손상위험에 대한 원인제거 3)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해체·제거시 석면의 비산방지 조치수립 4) 보수하여도 잠재적인 석면노출 위험이 우려될 경우 제거 조치 |
| 낮음 | 11이하 | <석면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낮은 상태> 1)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2) 석면함유 건축자재 또는 설비가 손상되었을 경우 즉시 보수 3)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인위적으로 손상시키지 않도록 함 4) 전기공사, 배관공사 등 건축물 유지보수 공사 시 석면함유 설비 또는 자재가 훼손되어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작업수행 |

※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높음” 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 “높음”** 을 유지하고,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중간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낮음”** 을 유지

☞ **손상(누수, 비산성 포함)이 있는 경우 원인 제거 또는 즉시 보수**

□ 관련 규정

○ 관련법: 「학교보건법」, 「먹는물관리법」, 「수도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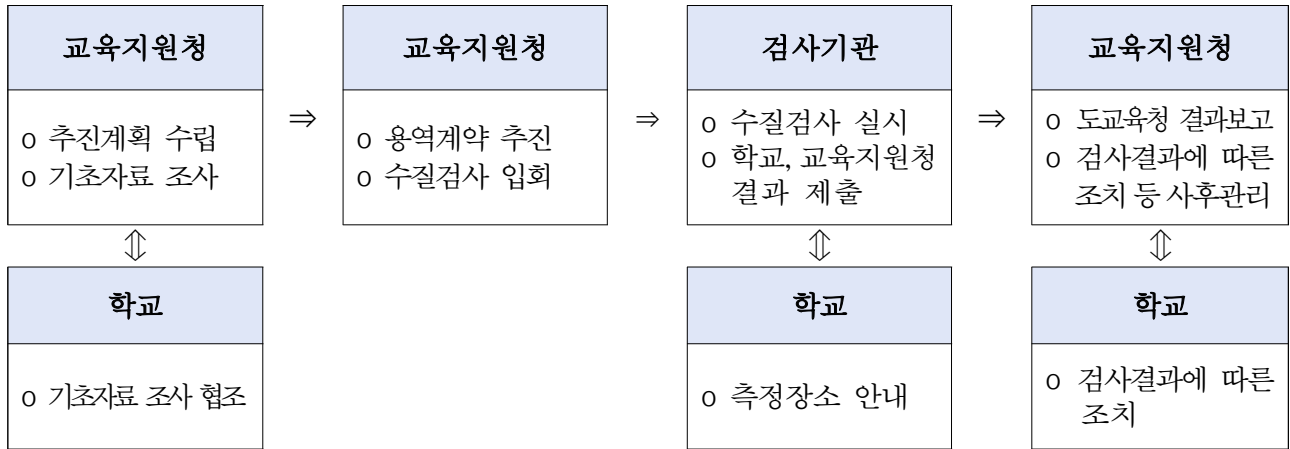
-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제4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 고시 제2022-20호)
-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먹는물관리법」 제5조
- ❖ (검사기관의 지정) 「먹는물관리법」 제43조
- ❖ (위생상의 조치) 「수도법」 제33조
- ❖ (수질검사) 「지하수법」 제20조
- ❖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58조 ~ 제6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 ❖ (용어정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용역

①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대상 및 횟수

| 구분 | 대상 | 단가 (23년기준) | 횟수 |
|-----|-----------------------------------|---------------|-------------------------------|
| 정수기 | 정수기 및 정수기와 유사한(정수 기능, 필터 설치 등) 기기 | 11,000원 | 연 4회 |
| 저수조 | 먹는 물(세면용 포함) 이용 저수조 | 25,000원 | 연 1회 |
| 급수관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건물의 급수관 | 31,000원 | 연 1회 (법상 2년주기) |
| 지하수 |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학교 | 394,000원 | 연 4회 (정밀검사 1회, 간이검사 3회) |

2 업무 흐름도



3 교육지원청 추진사항

-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일괄계약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수질검사 기초자료 조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수질검사 일괄계약 발주 및 계약체결
- 검사기관의 사업수행 상황 수시 참관
- 검사 결과 제출(도교육청) 및 사후조치

4 업무추진 일정

- (1월) 수질검사 기본계획 수립 및 학교별 기초자료 조사
 - 학교수가 많은 교육지원청은 1개 업체가 관내 모든 학교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역별로 구분하거나 학교 수를 나누어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2월) 수질검사 일괄계약 발주 및 계약
 - (수탁기관 선정)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관이 지역 실정,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
 - (계약 시 조건부여)
 - 가.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이 개정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

나. 용역 추진시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상 수급인의 안전·보건 의무 기재

○ (3~12월) 먹는물 수질검사 모니터링

- 시료 채수는 학교 담당자 또는 교육지원청 담당자 입회하에 채수·봉인

※ 수질검사 업체 등에 일임 금지

- 작업장순회 점검: 주 1회 / -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 1회

- 표본 수질검사 및 관리실태 점검: 분기 1회 (총 정수기 중 10% 내외)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매월 1회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또는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은 비대상)

- 매분기 수질검사 완료 후 기성금 지급 요청시 지급 처리

○ (4월 / 7월 / 9월 / 12월) 수질검사 결과 보고

○ (12월) 사업비 정산보고

5 학교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별 기준

○ 정수기 - 2개 항목

| 검사횟수 | 총대장균군 | 탁도 | 비고 |
|--------|-----------|----------|----|
| 분기별 1회 | 불검출/100ml | 0.5NTU이하 | |

○ 저수조 - 6개 항목

| 검사횟수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대장균 | 탁도 | 수소이온농도 | 잔류염소 | 비고 |
|------|-------------|-----------|-----------|----------|---------|-------------|----|
| 연 1회 | 100CFU/ml이하 | 불검출/100mL | 불검출/100mL | 0.5NTU이하 | 5.8-8.5 | 0.1-4.0mg/L | |

○ 급수관 - 7개 항목

| 검사횟수 | 탁도 | 수소이온농도 | 색도 | 철 | 납 | 아연 | 구리 | 비고 |
|------|--------|---------|------|---------|----------|-------|-------|----|
| 연 1회 | 1NTU이하 | 5.8-8.5 | 5도이하 | 0.3mg이하 | 0.01mg이하 | 3mg이하 | 1mg이하 | |

○ 지하수(간이) - 6개 항목

| 검사횟수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대장균 | 암모니아성질소 | 질산성질소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비고 |
|--------|-------------|-----------|-----------|-----------|----------|------------|----|
| 분기별 1회 | 100CFU/ml이하 | 불검출/100mL | 불검출/100mL | 0.5mg/L이하 | 10mg/L이하 | 10mg/L이하 | |

○ 지하수(정밀) - 46개 항목

| 검사횟수 | 일반세균 | 총대장균군 | 대장균군 | 납 | 불소 | 비소 | 비고 |
|------|-------------|-------------|------------|------------|-----------|-------------|----|
| 연 1회 | 100CFU/ml이하 | 불검출/100mL | 불검출/100mL | 0.01mg/L이하 | 1.5mg/L이하 | 0.01mg/L이하 | |
| | 셀레늄 | 수은 | 시안 | 암모니아성질소 | 질산성질소 | 카드뮴 | |
| | 0.01mg/L이하 | 0.001mg/L이하 | 0.01mg/L이하 | 0.5mg/L이하 | 10mg/L이하 | 0.005mg/L이하 | |
| | 보론 | 폐놀 | 다이아지논 | 파라티온 | 페니트로치온 | 카바릴 | |

| | | | | | | |
|--|---------------|-------------|-------------|-------------|-------------------|------------|
| | 1mg/L이하 | 0.005mg/L이하 | 0.02mg/L이하 | 0.06mg/L이하 | 0.04mg/L이하 | 0.07mg/L이하 |
| | 1,1,1-트리클로로에탄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트리클로로에틸렌 | 디클로로메탄 | 벤젠 | 톨루엔 |
| | 0.1mg/L이하 | 0.01mg/L이하 | 0.03mg/L이하 | 0.02mg/L이하 | 0.01mg/L이하 | 0.7mg/L이하 |
| | 에틸벤젠 | 크실렌 | 1,1-디클로로에틸렌 | 사염화탄소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경도 |
| | 0.3mg/L이하 | 0.5mg/L이하 | 0.03mg/L이하 | 0.002mg/L이하 | 0.003mg/L이하 | 1000mg/L이하 |
| |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 냄새 | 맛 | 구리 | 색도 | 세제 |
| | 10mg/L이하 | 냄새가 없을 것 | 맛이 없을 것 | 1mg/L이하 | 5도이하 | 0.5mg/L이하 |
| | 수소이온농도 | 아연 | 염소이온 | 철 | 망간 | 탁도 |
| | 5.8-8.5 | 3mg/L이하 | 250mg/L이하 | 0.3mg/L이하 | 0.3mg/L이하 | 1NTU 이하 |
| | 황산이온 | 알루미늄 | 크롬 | 1,4-다이옥산 | | |
| | 200mg/L이하 | 0.2mg/L이하 | 0.05mg/L이하 | 0.05mg/L이하 | | |

□ 정수기 표본 수질검사 및 먹는물 관리실태 점검

1 정수기 표본수질 검사

- **점검목적:** 지원청 자체 표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정수기 부실관리 예방 및 업체별 수질검사 결과 교차 비교
- **점검계획 수립:**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 내용에 정수기 표본수질검사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공문에 점검 학교명은 비공개)
- **점검시기:** 분기별 1회(연 4회) 실시(전체 학교 정수기 중 10%이상)
- **점검대상:** 부적합 정수기 발생교 및 먹는물 관련 특이사항 있는 학교(최근 3년 이내 대상교를 제외)
- **점검방법:** 대상교에 불시에 방문하여 시료 채수 후 수질검사 실시
 -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직접 시료채수 후 수질검사기관(상수도사업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
 -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담당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함께 학교에 방문하여 업체담당자가 시료채수 후 검사 실시
- **수질검사 항목:** 탁도, 총대장균군(2항목)
- **수질검사 결과 처리**
 - 가. (교육지원청) 학교로 정수기 수질검사 결과 알림 공문 시행
 - 나. (학교) 정수기 수질개선 조치 후 재검사 실시

② 먹는물 관리실태 점검

- 점검목적: 학교내 먹는물관리 지원으로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
- 점검대상: 학교 저수조, 급수관, 지하수, 정수기 등 먹는물 관리
- 점검방법
 - 점검 전날 학교로 점검대상임을 알려 관련 서류 준비 요청
 - 붙임1 점검표에 의거 점검 실시
 - 정수기 표본수질검사 대상교와 병행 실시
- 점검내용
 - 먹는물 현황 파악(기존 보고자료 참고)
 - 먹는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 저수조 청소 등 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

| 구분 | 횟수 | 관련규정 |
|------|---------------------------------|---------------------------------|
| 청소 | 반기별로 연 2회 이상 (가급적 개학 직전에 실시)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2조의5 |
| 위생점검 | 월 1회 이상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2조의5, 별표 6의2 |
| 수질검사 | 연 1회이상(6개 항목)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제22조의5 |

-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현황

| 구분 | 검사횟수 | 검사항목 | 관련규정 |
|------|-------|-------|---------------------|
| 수질검사 | 2년 주기 | 7개 항목 |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7 |

※ 법상 검사횟수는 2년주기이나 경기도교육청 용역사업으로 연 1회 실시 중

- 정수기 위생관리 및 수질검사 현황

| 구분 | 검사횟수 | 검사항목 | 관련규정 |
|------|---------------------------------|----------------------|----------------|
| 수질검사 |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2회는 개학 직전에 실시) | 2개 항목 (총대장균군, 탁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 지하수 수질검사 등 관리 현황

| 구분 | 검사횟수 | 검사항목 | 관련규정 |
|------|--------------|----------------------------|---|
| 음용수 | 분기별로 연 4회 이상 | 47개 전 항목 1회, 6개 일부항목 3회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
| 생활용수 | 3년마다 1회 | 19개 항목 1회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별표4 참고 ※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은 제외 |

□ 관련 규정 및 지침

○ 관련법: 「학교보건법」

-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제4조
- ❖ (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학교보건법」 제4조2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제2022-20호)

▶ 관련지침: 교사 내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 개정판)

□ 공기질 관리 기준 및 측정방법

① 공기질 측정 대상 및 시기

- 단설유, 공·사립 초, 중, 고, 특수학교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② 공기질 측정 항목 및 기준

○ 측정항목: 총 23개 항목

| 구분 | 공기질 등(18개 항목) | 실내환경(5개 항목) |
|-------|---|--------------------|
| 측정 항목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틸렌), 석면, 오존, 진드기 | 환기, 온도, 습도, 조도, 소음 |
| 측정 환경 | 수업중교실 또는 빈교실 | |

○ 측정기준 및 방법: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6차 개정판)에 의거 측정

③ 공기질 측정 용역계약 추진

| 구분 | 주체 | 업무 |
|----------|-------|--|
| 과업지시서 작성 | 담당부서 | 1. 각 학교 공기질 측정 항목 물량조사 2. 공기질 원가계산 의뢰(한국물가정보) |
| 계약심사 의뢰 | 재무기획관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계약심사의뢰 접수 |

| | | |
|-----------|-------|---|
| | 감사과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일상감사요청 접수 |
| 계약 진행 | 재무기획관 | 1. 품의 접수(계약요청으로 같음) 2.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및 낙찰, 계약체결 |
| 공기질 측정 | 용역업체 | 1. 각 학교 일정 송부 및 협조사항 안내 2. 상반기 공기질 측정 진행 및 입회, 결과 송부 |
| 결과보고 및 정산 | 담당부서 | 결과보고, 용역업체에 기성금 지급, 예산잔액 반납 |

□ 공기질 측정기관 선정

1] 공기질 측정기관 선정 기준(자격요건 등)

○ 수탁 기관 선정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 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무기획관 에서 지역 실정,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계약 방법 결정

○ 과업지시서 작성

- 과업수행 기간 중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등이 개정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명시
- 안전보건 수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
- 학교에서 공기질 측정을 수행하는 모든 작업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함을 명시

2]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 구분 | 계약심사 | 일상감사 |
|------|---|---|
| 근거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3.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및 제5조 |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2조 2. 경기도교육청 일상감사 지침 |
| 대상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
| 필요서류 | 심사요청서 및 요약서 | 일상감사 실시 의뢰서 |
| 요청부서 | 경기도교육청 재무기획관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 소요기간 | 10일 이내 | 5일 이내 |

□ 관련 규정

○ 관련법: 「학교보건법」, 「군소음보상법」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제4조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 추진배경

1 경기지역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현황

| 군용비행장 16개 | | 군사격장 14개 | |
|-------------------|------------------|------------------|---------------------|
| 1. 평택비행장(K-6) | 2. 수원비행장(K-13) | 1. (파주)무건리교학회훈련장 | 2. (양주)노아산사격장 |
| 3. 성남비행장(K-16) | 4. 오산비행장(K-55) | 3. (파주)직천리사격장 | 4. (포천)지포리전차포사격장 |
| 5. 고양비행장(G-113) | 6. 포천비행장(G-217) | 5. (포천)승진훈련장 | 6. (포천)송호동진지 |
| 7. 이천비행장(G-510) | 8. 파주비행장(G-110) | 7. (포천)담터진지 | 8. (포천)용화동피탄지 |
| 9. 가평비행장(G-213) | 10. 포천비행장(G-231) | 9. (연천)거저울사격진지 | 10. (연천)부흥동사격진지 |
| 11. 하남비행장(G-280) | 12. 양주비행장(G-218) | 11. (포천)꽃봉사격진지 | 12. (연천)다락대(피탄지) |
| 13. 남양주비행장(G-290) | 14. 용인비행장(G-501) | 13. (양평)매봉산종합훈련장 | 14. (여주)여주사격장(R-17) |
| 15. 김포비행장(G-107) | 16. 평택비행장(N-234) | | |

*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국방부 고시 제2021-51호) 기준

2 정온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학교가 「군소음보상법」상 피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나.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수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등 피해 지원 필요

□ 군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

① 군소음 피해 학교 관련 현황

○ 군사시설 인근 소음피해 학교 실태조사 결과 (2023. 8월 기준)

| 계 | 소음피해 기준별 학교수(병설유는 초등학교에 포함) | | | | 비고 |
|-----|-----------------------------|-----|------|-----|----|
| | 용역측정 | | 자체조사 | | |
| | 교육청 | 국방부 | 학교 | 교육청 | |
| 173 | 66 | 66 | 31 | 10 | |

○ 관련 피해 및 문제점

- 가. 군사시설 및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학습피해 및 정서저해
(비행소음, 비행기 이착륙소음, 사격소음 및 폭발음, 탱크 등 군사차량 운행소음)
- 나. 드론 수업 등 교육과정 운영 시 군부대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학습권 침해
- 다. 군사훈련 일정을 알지 못해 수업 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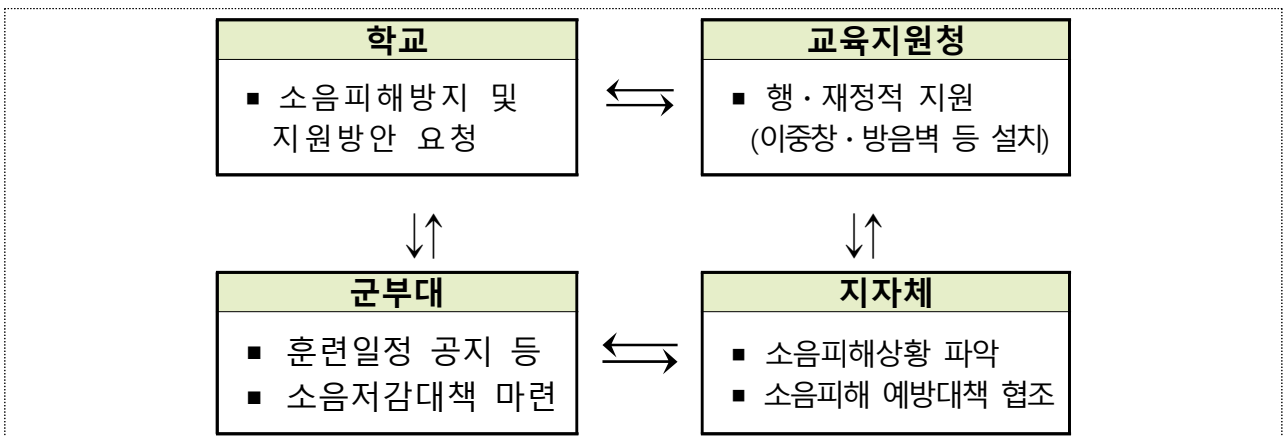
② 군소음 피해 학교 지원 협의체 구성

○ 위원 구성: 교육기관(학교 및 교육지원청), 지자체, 군부대 관계자 등

○ 협의체 주요 협의사항

- 가. 군사훈련 일정 공지를 통해 소음피해발생 예측 및 대비 논의
- 나. 소음저감대책 및 지원사업 추진 논의(방음시설 및 냉·난방기 설치 등 지원)
- 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항 협의
- 라.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방안

○ 협의체 운영체계



③ 군소음 피해 개선사업 지원 수요조사

가. 군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수요조사

- 학교 일반현황: 소재지, 개교연도, 석면건축물 해당여부 등
- 군소음 발생현황: 부대명, 소재지, 발생원, 소음피해 발생빈도
- 지원사업: 창호교체, 냉난방기 교체, 교실출입문 교체, 기타 환경개선

| 군소음 피해학교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 군소음 발생현황 | | | | 군소음 피해 지원사업 수요조사 | | | | | | | | | | | | | | | |
| | | | | 시설환경개선 | | | | | | | | | | | | | | | |
| 부대명 | ①소재지 (읍/면/동) | 발생원 | ② 소음피해 발생빈도 (주[5일] 당 발생일) | 창호 교체 | | | 냉난방기 교체 | | | 교실출입문 교체 | | | 기타 환경개선 | | | | | | |
| | | | | ③설지년도 | ④필요실 수 | ⑤개선사유 | ③설지년도 | ④필요실수 | ⑤개선사유 | ③설지년도 | ④필요실수 | ⑤개선사유 | 사업명 | ③설지년도 | ④필요실수 | ⑤개선사유 | 소요예산 (천원) | 산출기초 | |
| 수원비행장 | 수원시 00동 | 군항공기 | 5 | 2000 | 45 | 지원 필요성 기재 | | | | | | | | | 체육관 출입문 교체 | | | | |
| 평택비행장 | 평택시 00동 | 군항공기 | 3 | | | | 2007 | 55 | 지원 필요성 기재 | | | | | | 방음장비 교체 | | | | |
| 00 사격훈련장 | 파주시 00읍 | 군사격 | 2 | 1995 | 50.5 | 지원 필요성 기재 | 2005 | 31 | 지원 필요성 기재 | 1995 | 40 | 지원 필요성 기재 | | | | | | | |

나. 기초자료 확인 및 검토

-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그 외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학교 해당 여부 확인
- 학교별 주관에 의한 판단으로 같은 소음원(비행장, 사격장 등)에 대한 학교별 소음피해 여부가 상이하게 조사됨에 따라, 필요시 학교 방문을 통해 소음측정(실내, 실외) 및 학교 관계자 면담 등 현장 조사
- 이미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학교는 추가 신청 불가(시설과 사업 포함)
- 석면건축물 학교인 경우 석면제거사업 연계 추진 검토 필요

④ 군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

가. 소음피해학교의 지역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나.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다.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 사업

라.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

마.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활동

바. 특기적성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 학생과 교원에 대한 심의치료 등 프로그램 운영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제5조)

□ 관련 규정

- 관련법: 「학교보건법」, 「어린이식생활법」, 「식품위생법」 등
- ❖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학교보건법」 제4조
 -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기준」(교육부고시 제2022-20호)
-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정서저해 식품 등의 판매 금지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9조
- ❖ (식품 등의 취급,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식품위생법」 제3,4조
- ❖ (소독 의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 매점 및 자판기 관리 항목

① 환경위생 관리

- 가. 매점 내외 및 상품진열대, 재료보관실 등 주변은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 나. 상품진열대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물걸레질 등을 실시
- 다. 쓰레기통 및 음식물 찌꺼기통은 뚜껑이 설치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그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
- 라. 매점 내외 탁자 위에 음식물 흔적이 없도록 수시로 청결 상태를 확인
- 마. 매점 내외 및 상품진열대에 박스류, 상품 등의 적재물을 깔끔하게 정리정돈
- 바. 상품진열대는 식품과 비식품을 구분하여 정리정돈
- 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정기 소독 시 매점·자판기 주변까지 소독 실시 후 일상점검표에 해당 일자 기재

② 식품위생 관리

- 가. 취급하는 식품은 제품명, 성분, 제조일자,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소재지, 영양성분 등의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성분 표시 등을 임의로 훼손하여서는 안 됨

- 나.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진열 금지
- 다. 무신고(허가), 유통기한 초과, 비포장 제품, 직접조리* 식품,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 진열 금지
 - * 운영자가 직접 반제품 식품 등에 열을 가하거나, 끓이거나, 조리하는 경우
 - ** 사행심 조장, 돈·화폐·담배·술병, 성적 호기심 유발, 사람 골격 모양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 라. 제품의 표시된 보관요령(냉장, 냉동, 상온 보관 등)을 준수(※ 냉동·냉장 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함)

3 기타사항 관리

- 가. 매점·자판기 계약 시 매점운영 특수조건[참고자료2]에 판매제한 제품을 명기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은 진열·판매하여서는 안 됨
- 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신고하여 지정받아야 함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정 의무화(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다. 점검 결과는 3년간 보관(2021.7월 점검 결과부터 적용)

□ 매점 및 자판기 점검 관리

1 점검 관리

○ 점검 종류 및 주기

| 구분 | 항목 | 점검주기 | 내용 | 비고 |
|--------|------|-------|--------------------------------------|----|
| 학교 | 일상점검 | 1회/월 | 환경위생 관리 및 식품 보관 요령 준수 여부 | |
| | 정기점검 | 1회/분기 | 환경위생, 식품위생, 기타관리 사항 준수 여부 | |
| 교육 지원청 | 현장점검 | 1회/연 | 매점·자판기 운영 학교에 대하여 정기점검 항목 준수 여부 현장점검 | |

2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판별

-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식품

나. 고카페인 식품: 카페인 함량이 1ml 당 0.15mg 이상(0.015%, 150ppm)인 액체 식품 등

| | | |
|------------------------|---|-----------------------|
| 어린이 기호식 품의 범위 | 가공식품 | 조리식품 |
| | 간식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 및 캔디류 ○ 빵류 ○ 초콜릿류 ○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 (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 중 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
| 식사 대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류(용기면만 해당)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 햄버거, 피자 |

| | |
|------------------------------|--|
| 고열량 저영양 식품 판별하 기 | <p>※ 월별 현황 자료 탑재 사이트 : 식약처 홈페이지 → 알림 → 공지/공고 → 공고</p> <p>※ 어린이 기호식품 알림e서비스 사이트 활용</p> <p>https://www.foodsafetykorea.go.kr/hilow/qfood/sfoodlist.do?menuKey=4</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어린이 기호식품(고열량·저영양, 품질인증) 알림e 서비스 </p> <p style="text-align: center;"> 제품명검색 영양성분입력판정 품질인증식품조회 이용안내 </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div style="border: 1px solid blu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 0;"> 제품명을 입력하세요.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font-size: small;">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품명 검색은 학교주변에서 주로 판매되는 어린이기호식품에 한하여 검색되는 기능입니다.</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품명으로 검색되지 않은 제품은 포장지에 있는 영양성분을 확인하여 영양성분입력 판정으로 고열량저영양식품여부를 확인하세요.</p> </div> </div> </div> <p>※ 단, 1회섭취참고량이 30g 미만인 식품 양갱,푸딩 제외한 캔디류, 초콜릿가공품 제외한 초콜릿, 과자 중 강냉이, 팝콘 경우 30g으로 환산적용</p> <p>그외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보다 적은 식품은 총 내용량에 대한 영양성분 기준 적용</p> |
|------------------------------|--|

□ [참고사항] 용어 정의

❖ 교육(학교)협동조합

-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최소 5명 이상 15명 내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가게, 학생문구, 직업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공익적 사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참고자료]

매점계약 예시 (경기도교육청 재산관리 업무편람 발췌)

○○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특수 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23.10.01.~2024.9.30.까지 1년간으로 한다.

(중략)

제19조(매점운영 특수조건)

- ① 사용인은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용인은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판매품목** :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과자류, 유제품, 음료수, 빵류, 빙과류, 문구류 등, 친환경농산물을 재료로 한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하기위해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농식품,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품질인증식품
- ④ **판매제한품목** : 무신고·무허가 제품, 영양 성분 미표기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 저해 식품, 비포장 제품, 현장 조리 식품, 고카페인 표시 제품, 기타 학교장이 결정한 커피, 탄산음료, 껌, 컵라면, 햄버거 빵류(햄버거, 피자빵, 샌드위치 등 식사대용 식품) 등
- ⑤ **기타서비스제공가능행위** :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의 음료(커피제외)자판기(2대이하) 영업

제20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학생건강관리

3. 학생 건강관리

가. 학교 감염병 예방 및 발생대응 관리

□ 관련 규정 및 지침

○ 관련법: 「학교보건법」, 「감염병예방법」, 「결핵예방법」 등

- ❖ 「학교보건법」 제8조, 제10조, 제14조 등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1조의2, 제34조

▶ 관련지침

-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매뉴얼(3차 개정판)
- 2023 국가결핵관리지침

□ 감염병 단계별 예방 관리 및 대응

1 예방단계(평시)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연간 계획 수립

※ 감염병 예방 관리계획 주요내용

| <p>○ 조직 구성 예시(안)</p> <p style="text-align: center;">[그림 2-1] 학교감염병관리조직 구성(예시)</p> | <p>○ 초·중학교 신입생 취학 예방접종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인이 필요한 예방접종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구분</th> <th>예방접종 종류</th> </tr> </thead> <tbody> <tr> <td>초등학교</td> <td>① BCG ② B형간염 ③ DTaP ④ 폴리오</td> </tr> <tr> <td>중학교</td> <td>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1종] ⑥ 폐렴구균 ⑦ MMR ⑧ 수두 ⑨ A형간염 ⑩ 일본뇌염 ⑪ 인플루엔자(입학 전년도)</td> </tr> <tr> <td>중학교</td> <td>① Tdap(또는 Td) 6차 ② HPV 1차(여학생) [3종] ③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ES와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초등학교 및 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확인 및 등록 가능 | 구분 | 예방접종 종류 | 초등학교 | ① BCG ② B형간염 ③ DTaP ④ 폴리오 | 중학교 | 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1종] ⑥ 폐렴구균 ⑦ MMR ⑧ 수두 ⑨ A형간염 ⑩ 일본뇌염 ⑪ 인플루엔자(입학 전년도) | 중학교 | ① Tdap(또는 Td) 6차 ② HPV 1차(여학생) [3종] ③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
|---|---|----|---------|------|---------------------------|-----|---|-----|---|
| 구분 | 예방접종 종류 | | | | | | | | |
| 초등학교 | ① BCG ② B형간염 ③ DTaP ④ 폴리오 | | | | | | | | |
| 중학교 | ⑤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1종] ⑥ 폐렴구균 ⑦ MMR ⑧ 수두 ⑨ A형간염 ⑩ 일본뇌염 ⑪ 인플루엔자(입학 전년도) | | | | | | | | |
| 중학교 | ① Tdap(또는 Td) 6차 ② HPV 1차(여학생) [3종] ③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 | | | | | | | |
| 학교 감염병 관리 조직 구성 | 예방접종 관리 | | | | | | | | |

| | |
|----------------------|---|
| 감염병 예방 교육 | 보건교사 등이 교직원·학생에게 월별·계절별 빈발 감염병의 예방·관리 방법 교육 |
| 학교 내 감염병 발생시 보고 및 대응 | ○ 학교장은 감염병 인지시 즉시 NEIS 입력, 지원청 보고 ○ 결핵·홍역·콜레라·장티푸스·파라티푸스·세균성이질·A형간염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은 보고절차 준수 및 보건소에도 즉시 신고 |
| 수동감시체계 운영 | ○ 수동감시: 평소에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 과정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발견하는 것 ○ 능동감시: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 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 |
| 일시적 관찰실 지정 | ○ 감염병 유증상자의 일시적 격리·관찰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며, 1층에 마련이 원칙 |
| 방역 활동 | ○ 방역 물품 비축: 적정 수량 비축, 사용기한 준수 ○ 소독 - 정기 소독: 4~9월-2개월에 1회 이상, 10~3월-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임시 소독: 학교 내 감염병 환자 발생 시 해당 공간에 대해 실시 ○ 환기: 교실 등의 출입문을 10분간 열어 충분히 수시로 환기 |

○ 학교

- 학교내 감염병 발생현황 조사 및 보고(NEIS를 통해 보고)
- 학교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NEIS를 연계해 초·중학생 입학생 예방접종 이력 확인

○ 교육지원청

- 학교 감염병 발생 보고(NEIS를 통해 매일 확인 및 보고)
- 감염병 컨설팅 및 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단(보건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외부전문가) 구성·상시지원 가능 체계 유지
- 감염병 대응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실적 제출(12월)

| [서식 제11호] | | | | |
|---|----------|---|----------------------|--|
| <input type="checkbox"/> 2023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 구성 현황 및 운영실적 | | | | |
| 교육지원청명 | 현장지원단 구성 | | 현장지원단 학교 지원 사례(운영실적) | |
| | 인원수(명) | 구성원 | 횟수 | 지원내용 |
| 안산 | 10 | 00대 의과대학 교수(1명), 소아청소년의월 월장(1명), 보건소 감염병관리팀장(2명), 보건교사(3명),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1명), 학생건강팀장(1명), 주무관(1명) | 7회 | 1학기 방역 특별지원기간(4회) -대상: 2020년 ~ 2023년 미방문교 -시기: 23. 3. 2. ~ 3. 16. -지원인원: 6명 -지원내용: 새학기 방역 지침 변경에 따른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사항 적용여부 확인 및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
| <input type="checkbox"/> 작성방법 | | | | |
| 1. 현장지원단 구성: 구성원은 보건교사, 교육지원청 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구성원의 소속 기관 및 직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제출기한: 2023.2.28. 경기도교육청 메신저(주무관에게 제출) | | | | |
| 2. 현장지원단 학교 지원 사례(운영실적): 현장지원단이 실제로 학교를 지원한 횟수, 지원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개조식으로 작성 - 제출기한: 2023.12.15.까지, 정기보고 시 공문 제출 | | | | |

- 감염병 대책반 구성 운영(교육지원청 전체 직원, 학교, 보건소(의료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구성)
-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
 - 대상: 학교 관리자 및 보건교사, 보건소 감염병 담당자 등
 - 방법: 훈련 전 시나리오 제공, 감염병 발생 단계에 따라 구성원별 대응 방안 논의
 - 실적 보고: 관내 학교 실적을 취합해 보고, 교육지원청 훈련 실적(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포함)
 - ※ 참고자료: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 학교안전 > 감염병정보 > 자료실
-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실시
 -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NEIS를 연계해 초·중학생 입학생 예방접종 이력 확인

2 대응 제1단계(학교)

- 감염병 유증상자를 발견하고 의료기관 진료를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 학교 내 유증상자 발생시 조치사항
 - 감염병 증상 확인 후 일시적 관찰실 이용 / 의료기관 진료 안내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 기간 동안 등교 중지
 - 교실 등의 창문을 수시로 환기, 감염병 발생에 따른 임시 소독 실시
- 감염병(미등교 학생 포함) 환자 발생 확인 즉시 대응 제2단계 활동 수행

3 대응 제2단계(학교)

- 의료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감염병 (의심)환자가 있어 추가 발생 및 유행 의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 조치사항
 - NEIS 전자결재를 통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며, NEIS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감염병(A형 간염, 결핵, 세균성 이질, 신종인플루엔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홍역)은 보건소에도 신고
 - 역학조사가 필요한 감염병(결핵 등)의 경우 서면(업무관리 시스템)과 유선

으로 교육지원청에 추가 보고

- 학교 내 능동감시 실시: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 (의심)환자 파악
-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학급 관리: 방역당국 등의 감염병별 지침에 따라 조치
- 유행여부 확인: 보건소 역학조사 시 감염병 유행 상황으로 결정되거나 학교 내 유행의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응 제3단계 활동 시행

※ 유행의심 기준

- ① 최대 잠복기 이내에 동일 학급에서 의심 또는 확진 환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② 최초 (의심)환자와 동일 학급은 아니지만 추가 (의심)환자가 이동식 수업이나 급식 등 공통된 공간에 노출되어 관련성이 의심되는 경우

4 대응 제3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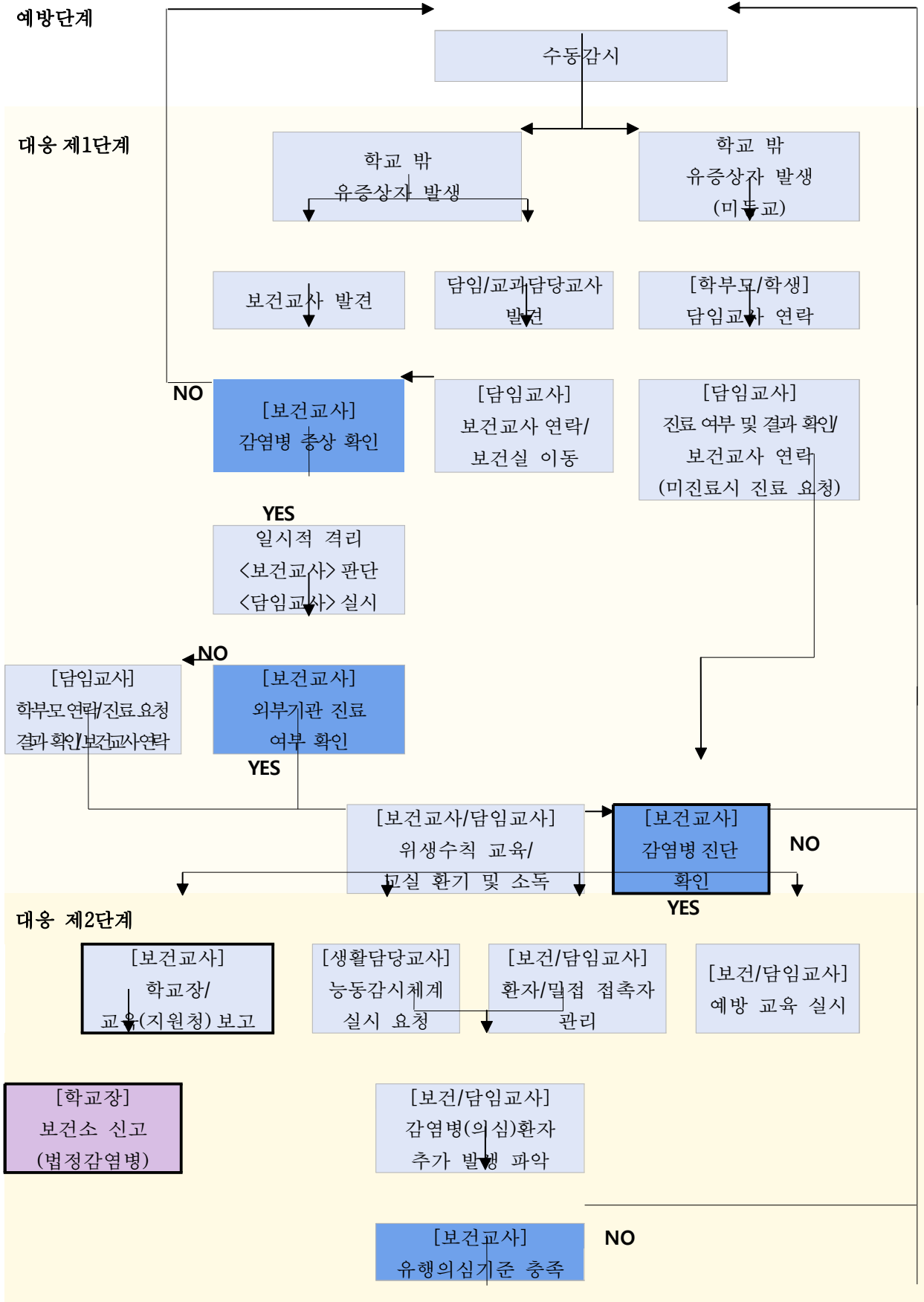
- 동일 학급에서 감염병 (의심)환자가 2명 이상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여, 학생 감염병 관리 조직의 유행 시 대응활동을 통해 유행 확산을 방지하는 단계
- (학교, 교육지원청) 유행 의심 상황 나이스 보고(※ 필요시 유선 및 공문보고)
- 능동감시 체계 강화
 - 매일 학급 학생들의 감염병 환자 추가 발생여부 파악
 - 환자 / 밀접접촉자 파악 · 관리 및 전파활동 차단
 - 주기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 및 방역활동 실시, 가정통신문 배부

5 복구단계

- 기존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어 사후조치를 완료하고 유행을 종료하는 단계
- 유행종료기준: 학교 내 해당 감염병 (의심)환자가 모두 완치되고, 최대 잠복기까지 추가 (의심)환자 발생이 없는 경우
(※ 방역당국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경우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름)
 -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를 학교장과 교육(지원)청에 보고
- (학교)수업 결손 학생 수업 보충 및 유행 종료 선언

[참고자료]

감염병 발생시 대응 흐름도



[참고자료]

법정 감염병의 분류

| 구분 | 제1급감염병 | 제2급감염병 | 제3급감염병 | 제4급감염병 |
|-------|---|--|---|---|
| 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7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3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6종)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
|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 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군중(CRE) 감염증 21. E형간염 22. 엠폭스 |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쓰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1. 인플루엔자 2. 매독(梅毒)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침구균딜롬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MRSA)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감염증 19. 장관감염증 20. 급성호흡기감염증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4.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
| 신고 주기 | 즉시 | 24시간 이내 | 24시간 이내 | 7일 이내 |

[참고자료]

국가위기상황 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기관별 대응 활동

| 구분 | 위기유형 | | 주요대응활동 | | | |
|----------------------|---|--|---|--|---|--|
| | 해외 신종 감염병 | 국내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 학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 |
| 예방단계 | | |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 · 방역당국과의 협조체계 구축 | · 감염병 전문가 자문 조직 구성 | |
| 관심 (Blue) | 해 외 에 서 의 신 종 감 염 병 의 발 생 및 유 행 | 국 내 원 인 불 명 · 재 출 현 감 염 병 의 발 생 | · 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 · 방역당국(보건소)과의 협조체계 점검 | · 시·도교육청 핫라인 구성, 운영 | |
| | | | · 각종 예방활동 | ·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하도록 요청 | · 교육부 매뉴얼을 교육청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운영 가능 | |
| | | | · 국가위기 대응 모의 훈련을 주관하여 실행하 거나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훈련에 참여 | · 국가위기대응 모의훈련 주관 | | |
| ※ 감염병별 대책반 운영(질병관리청) | | | | | | |
| 주의 (Yellow) | 해 외 신 종 감 염 병 의 국 내 유 입 | 국 내 원 인 불 명 · 재 출 현 감 염 병 의 제한 적 전 파 | · 환자 발생 감시체계 운영 · 감염병 예방 정보 제공 | · 감염병 대응 대책반 구성·운영 -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대책 수립 및 추진 - 환자 발생, 휴업 현황 파악 및 대응 | · 환자 발생 지역에서는 시·도 교육청 감염병 관리 협의체 운영 | |
| | | | ·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 | ·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 자원 지원 | | |
| | | | ※ 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질병관리청) | | | |
| 경계 (Orange) | 국 내 유 입 된 해 외 신 종 감 염 병 의 제한 적 전 파 | 국 내 원 인 불 명 · 재 출 현 감 염 병 의 지역 사회 전 파 | ·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감시 강화 - 감염병의 추가 전파 또는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한 지역 - 도교육청이 감시 강화를 명령하면,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및 학교는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는 감시 실시 | ·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 실시 | | |
| | | | · 학교 교육과정(현장체험 학습 등) 조정 | · 교육 연속성계획 (ECP) 수립 | · 감염병 대응 대책반 확대 운영 · 산하 교육기관에 감염병 대응자원 보급 지원 · 위기소통채널 운영 · 각종 교육활동(체육대회 등) 자제 요청 | |
| | | | · 필요시 환자 발생 지역에 보건인력 요청 | · 필요시 환자 발생 지역에 보건인력 지원 · 휴업 및 휴교 검토 | | |

| 구분 | 위기유형 | | 주요대응활동 | | |
|-------------|---|--------------------------------------|---|---|--------|
| | 해외 신종 감염병 | 국내 원인불명· 재출현 감염병 | 학교 | 교육지원청 | 경기도교육청 |
| | | | ※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보건복지부) | | |
| 심각 (Red) | 국내 유입 된 해외 신종감 염병의 지역 사회 전파 또는 전국 적 확산 | 국내 원인불명·재출 현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 · 전체 지역 대상 「학교유행경보」 발령에 준하는 감시 실시 | | |
| | | | · ECP 내 학교 비상 대응 체계 조직 숙지 | · 감염병 대응 대책반 확대 운영 · 산하 교육기관에 대한 예방 교육, 위생관리, 방역소독 지시 및 결과 모니터링, 필요 시 현장 점검 · 「집단행사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시 · 위기소통채널 강화 | |
| | | | ※ 필요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행정안전부) | | |
| 복구단계 | | | · 대책 본부 운영 종료 및 대응 활동 자체 평가 · 교육(지원)청과 산하 교육기관에 심리회복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예산지원 | | |

□ 교직원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 구분 | 결핵검진 | 잠복결핵감염검진 |
|--------------------------------|---|--|
| 목적 | - 활동성 결핵 여부 확인 | - 결핵균 감염 여부 확인 |
| 방법 | - 흉부X선검사, 객담검사 등 | -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GRA) - 투베르쿨린피부반응검사(TST) |
| ‘22.7.1.이후 채용자 (교직원·종사자) | -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검진이력이 있는 경우 같음 가능 | -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 ※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의 기관·학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에서 실시한 검진이력이 있는 경우 같음 가능(별도 정해진 기간 없음) (예) 20년에 어린이집 근무 중 검진, 23년에 초등학교로 소속 변경하는 경우 20년 검진 으로 같음(증빙서류필요, 재검사 불필요) |
| ‘22.7.1.이전 채용자 (교직원·종사자) | - 매년 1회 | - 소속된 기간 중 1회 ※ 법령상 23. 6. 30.까지 휴직자 포함하여 검진 실시해야하나, 계도기간 (23. 7. 1. ~ 9. 30.) 부여로 기한 연장됨 |

나 흡연예방실천학교 사업 운영

□ 관련 규정 및 지침

○ 관련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국민건강증진기본법」 등

❖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 제9조

-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교육기본법」 제27조

❖ (금연 및 절주운동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 (기금의 사용)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

❖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 관련지침: 2023년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실무 매뉴얼

□ 흡연예방실천학교 사업 운영

① 운영시기 및 내용

| <시기> | <내용> |
|--------|----------------------------------|
| 1월 | 흡연예방실천학교 신청 알림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
| 3월 | 흡연예방실천학교 선정 및 예산교부 |
| 3~4월 | 사업계획 입력 및 제출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
| 3~12월 | 교육지원청 특화사업 진행 및 학교 모니터링 |
| 11~12월 | 실천사례 나눔 및 지역 우수사례 선정 |
| 12월 | 사업결과 입력 및 정산보고 (금연서비스통합정보시스템) |

② (1월) 흡연예방실천학교 신청 알림

- 신청대상: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 유형
 - 기본형: 1,000천원 이상 3,000천원 미만
 - 심화형: 3,000천원 이상 8,000천원 이하
- 흡연예방실천학교 운영 신청서 및 계획서 검토

[참고1] 흡연예방실천학교 비교(기본형 VS 심화형)

| 사업내용 | 기본형 학교 | 심화형 학교 | 특수학교 |
|--|--------|-----------------------------------|-------------------------------------|
| • 기반구축 | 필수 | 필수 | 택 1 (※ 특수학교의 경우 1개 이상을 필수로 수행하여야 함) |
| • 활동준비 및 계획수립 - 요구도 조사, 사업 계획수립 | 필수 | 필수 | |
| • 학교 선포식 운영 | 선택 | 필수 | |
| • 흡연예방교육 - 초·중·고 흡연예방 표준 교육 프로그램(SENSE) - 초등학생 흡연예방 프로그램(Jr.END) 등 | 필수 | 필수 | |
| • 흡연예방활동(홍보 및 캠페인 포함) | 필수 | 필수 | |
| • 흡연학생관리 및 청소년 금연 프로그램 운영 - 중·고등학생 금연 프로그램(END), 흡연학생 3관왕 라이프코칭 프로그램(CROWN) 등 | 선택 | 필수 (흡연 학생이 없는 경우 '선택' 사업으로 조정) | |
| •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 | 필수 | 필수 | |
| • 교육청 연수 프로그램 참여(설명회 포함) | 필수 | 필수 | |
| •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 선택 | 선택 | |
| •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 선택 | 필수 | |

[참고2] 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 항목 | 편성 및 집행 기준 | 비율 |
|---------------|---|--------|
| 교육 ·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시 강사료 및 지도수당, 3관왕 라이프코칭 프로그램 운영비(간식비 및 식비) 및 지도수당 •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용 모형, 판넬 등 구입비, 자료 인쇄·제작·구입비, 평가 및 조사 비용, 교사 연구회 및 동아리 운영비 등 • 흡연여부 측정 관련 도구 구입비 등 | 90% |
|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재 수리비, 교육 훈련 참가비, 여비, 업무추진비(전체 사업비의 5% 이내) 등 기타 흡연예방사업에 필요한 비용 | 10% 이내 |

3 (1월) 흡연예방실천학교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구성: 흡연예방사업을 운영한 적 있는 경험이 풍부한 교사
- 역할: 학교 맞춤형 컨설팅, 교육지원청 사업 지원 등
 - 1차: 흡연예방실천학교 계획서 및 예산 재배정 검토
 - 2차: 흡연예방실천학교 우수사례 및 성과나눔 발표회 세부내용 기획
- 운영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경기도교육특별회계지침 기타수당(전문가 외)


4 (3~4월) 흡연예방실천학교 예산 교부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국고보조금 유의사항 준수하여 12월까지 집행 (반납 불가)
- 국고보조금이므로 공공재정환수법과 관련하여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안내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http://nosmk.khealth.or.kr>)에 계획 입력 및 제출

[참고3] 공공재정환수 제도 안내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법

보조금·보상금·출연금

+



시행령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부과

| | | |
|---------|---|----------------|
| 허위청구 | → | 부정이익 ×5 |
| 과다청구 | → | 부정이익 ×3 |
| 목적 외 사용 | → | 부정이익 ×2 |


부정청구의 유형

| | |
|---------|--|
|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 목적 외 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소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 오지급 |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의 잘못 지급된 경우 |

*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은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에 해당한다.


부정이익의 환수

이자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부정이익 환수

+



이자

5 (11~12월) 흡연예방실천학교 실천사례 나눔 및 지역 우수사례 선정

| 순 | 내용 | 주관 | 세부 사항 |
|---|---------------|-------|---|
| 1 | 우수사례 제출 | 학교 | - 학교별 우수사례를 교육지원청으로 제출 |
| 2 | 지역 우수사례 학교 선정 | 교육지원청 | - 우수사례 1교 선정 후 도교육청 제출, 선정 심사는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행 - 추후 교육감 표창 대상으로 추천(1교) |
| 3 | 성과 나눔 발표회 | 교육지원청 | - 교육지원청 자체 계획에 의거 추진, 교육지원청 현장지원단 협조 - 흡연예방실천학교 성과나눔 발표회 |

6 (12월) 사업결과 입력 및 정산보고

- 배정된 예산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금연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http://nosmk.khealth.or.kr>)에 실적 입력 및 결과보고서 탑재

다

정서행동특성검사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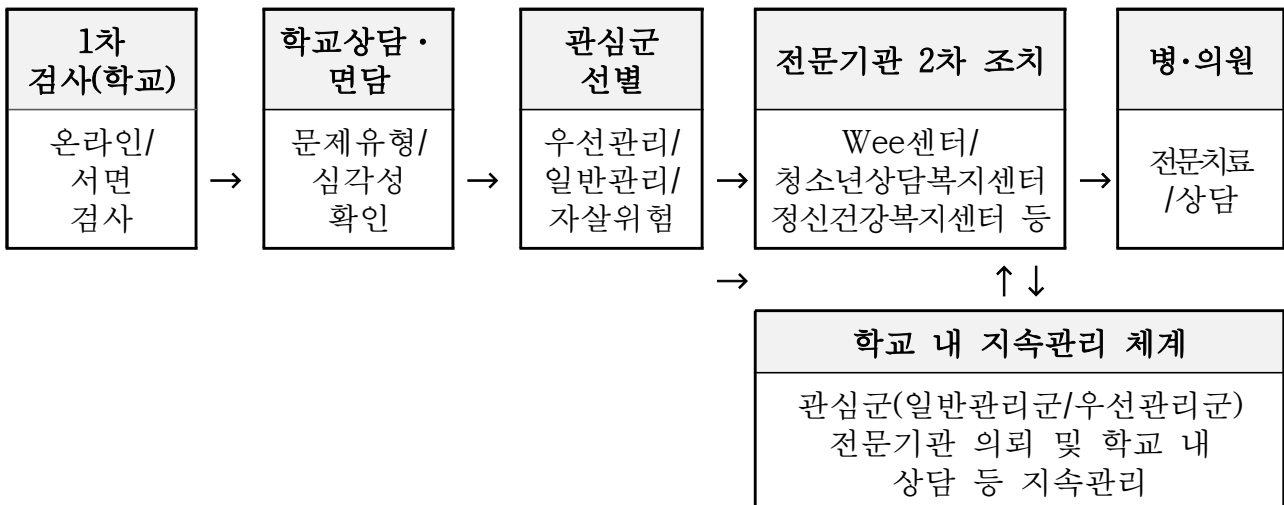
□ 관련 규정

- 관련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 ❖ (건강검사 등) 「학교보건법」 제7조
 - (정신건강 상태 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3
 - ❖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학교보건법」 제7조의2
 - ❖ (치료 및 예방조치 등) 「학교보건법」 제11조
 - ❖ (비밀누설금지 등) 「학교보건법」 제18조의2
 - ❖ (보건 및 복지의 증진) 「교육기본법」 제27조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방법

1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요

- (검사 대상) 초 1·4학년, 중·고 1학년
 - 대상자 제외 처리: 학교장이 교육청과 협의하여 결정(근거 자료 학교 보관)
 - 제외 예시: 신체적·인지적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
- (검사 기간) 4 ~ 5월중 (※ 매년 검사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
- (검사 절차) 2단계 검사(학교 1차, 전문기관 2차)



- (검사 방법) 온라인/서면 검사(모바일 검사 가능)
- (검사 내용) 정서·행동문제 / 성격특성 검사
- (사후 관리) 위험수준별(우선관리·일반관리) 관리체계 구축

| | |
|------|---|
| 관심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관리체계 구축 : 업무 총괄(부장교사 이상) 지정 의무화, 협의체(보건·상담·담임 등) 운영 등 - 학교 내 지속관리 : 학교 상담 정례화(분기별 1회 이상),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강화(연 4시간 이상) - 전문기관 2차 조치 연계 의뢰 (초등)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 등 (중등) 지역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등 |
| 우선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내 집중관리 : 학교장·교사·학부모, 전문기관,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운영, 학교상담 강화(월1회 이상) - 병·의원 즉시 의뢰 : 검사 절차와 관계없이 자살위험 학생 등 긴급을 요하는 학생 확인 즉시 전문기관이나 병·의원 의뢰 |

○ 참고사항

| | |
|---------------|--|
| 시스템 오류 관련 문의 | 나이스 ‘사용자 지원’ 질의글 등록(http://help.neis.go.kr) |
| 관련 매뉴얼 및 참고자료 |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관련자료 참조(www.schoolhealth.kr) |

○ 주요 강조사항

| |
|--|
| <p>[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 철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교육지원청 평가편람(자체평가)에 ‘관심군(자살위험군 포함) 학생 조치 현황’이 포함되어,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을 정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편람 [영역] 4.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교육 [평가지표] 4-4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전문기관 연계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

2] 2차 전문기관 심층평가 의뢰 절차

- (주관) 학교
- 2차 전문기관 현황

| | |
|----|------------------------------|
| 초등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의원 등 |
| 중등 | 지역별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의원 등 |

- (의뢰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일반관리군,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
- (의뢰 방법) 학생 의뢰서(학부모 동의서) 전달 및 기관과 일정 협의
- (유의 사항)
 - 가. 교내 상담결과 선별된 최종 관심군 현황을 전문기관에 연계
 - 나. 전문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일정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조정 후 학부모 안내
 - 다. 학교에서 연간계획 수립 시 전문기관과 사전협의·협력체계 구축하여 자살위험 등 우선관리 학생은 대상학생 확인 시 학부모 면담 및 전문기관(병의원) 의뢰 등 즉각 조치

□ 관련 규정 및 지침

○ 관련법: 「학교보건법」

- ❖ (건강검사 등) 「학교보건법」 제7조
- ❖ (건강증진계획의 수립) 「학교보건법」 제7조의 2
- ❖ (건강검사기록) 「학교보건법」 제7조의 3
 - 「학교건강검사규칙」
 - 「학생건강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 「학교 건강검진 실시방법·결과 판정 및 기재방법 등에 관한 기준」
 -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구강보건 지원 조례」

▶ 관련지침

- 2023년 학생건강검사 실시 계획(경기도교육청)
- 학생건강검사 표본학교 매뉴얼(2021 ~ 2023년)

□ 학생 건강검사 운영

1 개요

- (목적)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생활습관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학령기 학생 성장 평가 및 학생 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기초자료 마련
- (방법) 각급 학교에서 건강검사 실시 계획을 수립(3월)하고, 학교별 학부모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검진 기관 선정 후 검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시기) 연중 (3월 ~ 12월)
- 실시내용

| 검사항목 | 대상학년 | 실시기관 | 실시방법 |
|------|----------------------|---------------|--|
| 건강검진 | 초1,4/중1/고1 (건강검진) | 학교 지정 검진기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방문 개별검진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 비용: 1인당 17,800~44,470원 *학년별 검사항목 및 비만여부에 따라 검사비용 다름 |

| 검사항목 | 대상학년 | 실시기관 | 실시방법 |
|-------------|--------------------------------|----------------------------------|--|
| 건강검진 | 초2,3,5,6 (구강검진) | 학교지정 검진기관 | •병원방문 개별검진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
| 별도검사 | 초2,3,5,6 /중·고 2,3 (시력검사) | 학교자체 (교직원) | •공인시력표를 활용하여 좌, 우안 각각 측정 •교직원이 공인시력표를 활용하여 측정 |
| | 초2,3,5,6 /중·고 2,3 (소변검사) | 학교지정기관 또는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남북지부 | •실시기관 학교출장검사 또는 기관방문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
| | 고2,3 (결핵검사) | 학교지정기관 또는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 •실시기관 학교출장검사 또는 기관방문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2]에 의함 |
| 신체 발달 상황 | 초1,4/중1/고1 | 검진기관/학교 |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체질량지수) 산출 •학교건강검사규칙 [별표 1]에 의함 •1학기 말까지 실시, 8월말까지 NEIS입력/보고 |
| | 초2,3,5,6/ 중2,3/고2,3 | 학교자체 (교직원) | |
| 건강조사 | 초1 ~ 고3 (전학년) | 학교자체 (교직원)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4조의2(건강조사의 항목 및 방법) 병력, 식생활 및 건강생활 행태 등 학교별 건강조사 실시 [별지 제1호의2] 건강조사 항목 및 방법 참고 •건강검사 문진표로 대체 불가, 별도 실시 •1학기 말까지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통계처리 및 분석해 학생 건강관리 계획 수립 시 반영 |

2 건강검사 검진기관 선정 완화 승인

- 학교장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음
-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단,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는 1개 검진기관만 선정하여 출장검진 가능)
-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 제4항 1~2호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 중 부득이하게 1개의 검진기관 선정 또는 출장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는 학생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 완화 승인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승인 후 검진 실시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건강검진의 절차 등)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학교가 소재한 지역(읍, 면, 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불필요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불필요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교육지원청 교육장 승인 필요

□ 학생 건강검사 표본학교

- (표본학교)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경기도 140교
 - ※ 연간계획에 따라 대상학교가 지정되어 안내됨
- (표본학생) 표본학교 학년별 각 1개 학급 학생 전원
- 실시내용

| 검사항목 | 대상 학년 | 주요 내용 |
|---------|-----------------------------|--|
| 신체 발달상황 | 초1 ~ 고3 | 키, 몸무게 측정 후 비만도 산출 |
| 건강조사 | 초1 ~ 고3 | 표본학생 건강조사표 사용 - 조사결과 분석 후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참고 ※ '20년도부터 건강검진의 문진표와 건강조사를 분리함에 따라 검진 해당 학년(초1·4, 중·고1) 건강조사도 학교의 장이 실시 |
| 건강검진 | 초1·4/중1/고1 * 구강검진은 초등 전체 | 척추, 눈·귀, 콧병·목병·피부병, 구강(초등 전체학년), 병리검사(학교건강검사규칙규칙 제5조) -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며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결과 분석자료는 학교 건강증진계획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 실시방법

- 1) 학교의 장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
 -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학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을 선정가능
- 2) 검진대상자는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시행
 - 지역내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원활한 검진을 위해 교육감(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출장검진 가능
- 3) 검진기관은 검진실시 후 30일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학교장에게 결과 통보
- 4) 학교는 건강검사 결과를 검토 후 나이스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보고

○ 나이스 표본 조사 등록 매뉴얼 탑재 위치

- 나이스 사용자 지원(<https://help.neis.go.kr/>) > 알림광장 > 일반공지

□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 (조사대상) 경기 중·고등학교 164교 학생(학교별, 학년별 1개 학급)

※ 연간계획에 따라 대상교 및 대상 학급 등이 지정되어 안내됨

○ 일정 및 내용 (2023년도 계획 기준)

| 월 | 조사수행 절차 | 사업내용 |
|--------|--------------------------|--|
| 2-5월 | 조사 항목 및 지표 수요조사 | 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 접수 ※교육청 및 학교 필요항목 제안 가능 (http://yhs.kdca.go.kr > 조사항목 > 항목제안 > 제안서 등록) |
| 6~7월 | 자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 | 조사항목 및 조사수행(안) 확정 |
| | 표본학교 알림 및 담당교사 선정 | 경기164개교 명단 고지(붙임 2. 참고) 표본학교장이 조사지원 담당교사 선정 |
| | 표본학교 담당교사 온라인등록 | 조사지원 담당교사 정보 온라인 등록 (붙임 4. 참고) |
| | 학생현황등록(6.23.~7.3.) | (담당 교사) 학급 및 학생 수, 무선인터넷(Wi-Fi) 환경 사용 가능여부, 모바일 기기(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보유 유무 및 수량, 조사 시 사용 가능 여부 등 온라인 등록 |
| 8월 | 표본학급 알림 | 학년별 1개 표본학급 알림 ※질병관리청에서 공문으로 고지 |
| | 조사지침 온라인 교육(8.16.~8.25.) |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
| | 본조사 일정 등록(8.16.~8.25.) | 표본학급 조사 일시 온라인 등록 ※조사 시 교내 무선인터넷(Wi-Fi 아이디, 비밀번호 공유), 모바일기기(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사용 협조 필요 |
| 8~9월 | 조사 실시(8.28.~10.6.) | 온라인조사 실시 |
| 10월 | 결과산출, 자문위원회 개최 | 2023년 조사결과 검토 |
| | 유공자 추천 및 표창 | 유공자 표창 대상자 추천(10월), 표창(12월) |
| 24년 3월 | 주요결과 발표 | 2023년 조사결과 발표 |
| | 2023년 조사 결과 공개 | 2023년 통계집 발간 및 원시자료 공개 |

□ 관련 규정

○ 관련법: 「학교보건법」, 「교육기본법」, 「학교안전법」 등

- ❖ (학생의 보건관리) 「학교보건법」 제9조
 - 「경기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 「경기도교육청 희귀질환 학생 지원 조례」
- ❖ (보건교육 등) 「학교보건법」 제9조의2
 -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흡연·음주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조례」
 -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 「교육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부분 수정안(2021년)」
- ❖ (응급처치 등)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 「경기도교육청 응급처치 및 조난사고 대비 교육 조례」
- ❖ (양성평등의식의 증진) 「교육기본법」 제17조의2
-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복지법」 제31조

□ 보건교육 등 운영 방향

[보건교육 등 실시기준]

| 연번 | 구분 | 실시 기준 |
|----|----------------------------|---|
| 1 | 보건교육 | 최소 1개 학년에서 연간 17차시 이상 실시 |
| 2 | 성교육 | 학년별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 |
| 3 | 응급처치교육 |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 교육대상 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하나, 가급적 최소 1개 학년 이상 실시 |
| 4 |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 약물, 사이버중독 등에 대한 교육 기준: 10차시 |

1] 보건교육 운영

- (기본방침)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연중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건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추진방향) 보건수업은 최소 1개 학년에서 연간 17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으로 지속적, 체계적으로 실시
 - 초등학교 1개 학년: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중학교 1개 학년: 교과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 고등학교 1개 학년: 교과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2] 성교육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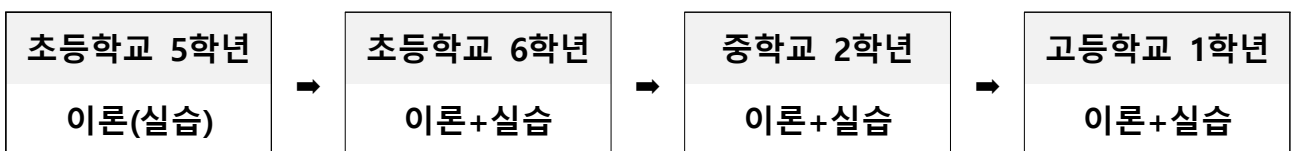
- (기본방침)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 성교육 계획’ 을 포함
- (추진방향)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부분 수정안(2021년)」 을 참고하여 학년별 연간 20시간 이상 실시

[학교 성교육 표준안 (교육부, 2021)]

- 유·초·중·고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
- 학교 성교육 방법 및 교사용 지도안 포함
- 6대 영역(인간발달, 인간관계, 대처기술, 성행동, 성 건강, 사회와 문화)으로 구분하여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 제시

3] 학생 응급처치교육 운영

- (기본방침) 학년 단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가급적 최소 1개 학년 이상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심폐소생술)교육 실시 권장
- (추진방향) 초등학교 6학년 및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



4] 흡연·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운영

- (기본방침)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체계에 흡연·음주·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반영

○ 추진방향

- 흡연·음주 등 약물에 처음 노출되기 이전(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발달단계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
- 중·고등학교 자유학년제, 진로교육 및 인성교육 등과 융합하여 학생 주도의 체험형 교육을 실시

[마약 예방교육 철저]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반드시 포함 되어 실시되도록 이행실적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 성장단계별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과정 지원 및 안내
- 마약 관련 전문기관(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 연계 학교 교육 지원 확대 및 학부모 인식개선 노력
- 마약 대처역량 강화를 위한 지자체,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력과 공조

□ 건강증진사업 운영 방향

Ⅰ 요양호자(소아당뇨 및 희귀난치성질환 등) 관리

- (기본방침) 학년 초, 전교생 건강실태 조사를 통해 건강문제를 지닌 요양호 학생을 파악하여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마련
- (추진방향)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요양호 학생에 대해 개별 면담과 정기 건강상담을 실시

[소아당뇨 및 희귀질환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학교)

- 학교장은 건강증진부를 구성하여 학기당 1회 이상의 회의 개최와 ‘당뇨병 학생 등 개별지원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원
 - ※ 지원 항목: 직접 주사, 주사 보조, 투약장소 제공, 혈당 체크, 인슐린 보관, 글루카곤 보관
- 학교구성원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질환별 교육훈련 지원 등 당뇨병 및 희귀질환 학생의 학습권과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청은 학교별 소아당뇨 및 희귀질환 학생 재학 현황을 토대로 학생 지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 「당뇨병학생 지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장이 담임교사, 보건·영양·체육교사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② 보건교육 거점학교 및 건강공감학교 운영

| 사업명 | 내용 | |
|--------------|----|---|
| 보건교육 거점학교 | 개념 | 학생중심의 보건교육 실천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보건교육 활성화에 기여하는 학교 |
| | 내용 | 보건교육 관련 권역단위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 보건 수업 공동지도안·평가 방법 개발, 수업 연구와 수업 나눔 활동 등 |
| 건강공감학교 | 개념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건강 문제를 진단·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 |
| | 내용 | 학교교육과정 비전과 교육철학에 ‘건강’ 개념 포함, 건강증진학교 운영방침 설정 및 운영체계 구축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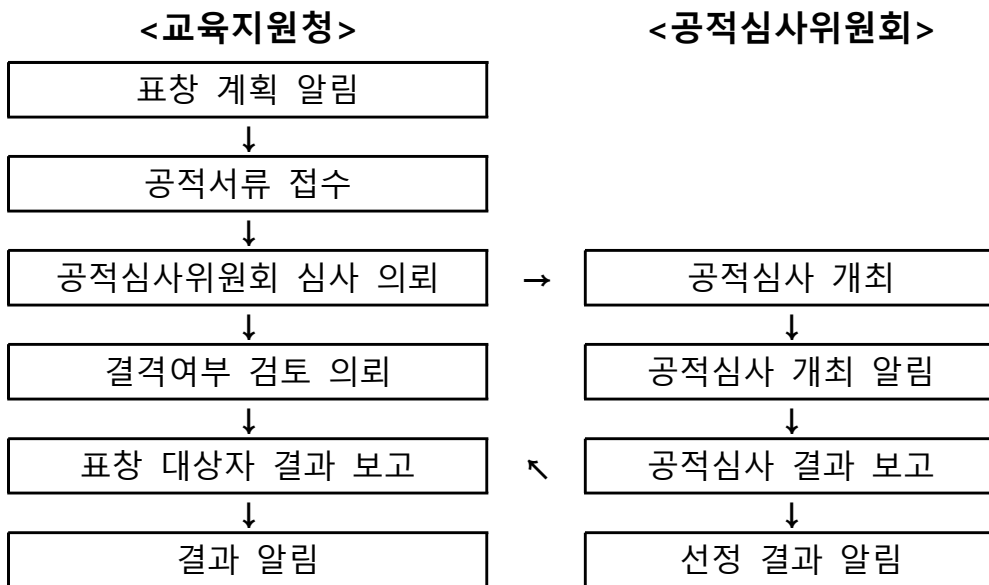
□ 관련 규정

○ 관련법

❖ (공적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 「경기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

□ 학생건강, 환경위생 관련 우수교 및 유공자 표창

1 절차



2 유의(확인)사항

○ 표창 계획에 따른 추천 기준 확인

- 가. 2개 분야 이상 중복 표창 불가
- 나. 동일 분야에 유공기관과 유공자 동시 지원 불가
- 다. 재직한 총경력 및 수공기간
- 라. 제척기준: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등

○ (공적서류 접수시) 공적조서 등 제출 미비 서류 확인

○ 결격여부 검토 의뢰

- 가. 유공자(공통): 도교육청 감사과 및 교육지원청 감사과에 결격여부 검토
- 나. 유공자(일반직): 기획경영과에 결격여부 검토
- 다. 유공자(교원): 교육과(초등, 중등교육지원과)에 결격여부 검토
- 라. 유공자(사립학교): 해당교에 결격여부 추가 검토
- 마. 유공자(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부서에 결격여부 추가 검토

만든 사람

| 연번 | 학습동아리명 |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
| 1 | 보건행정길잡이 | 성남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사무관 | 김성일 | |
| 2 | 보건행정길잡이 | 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 지방보건사무관 | 이선희 | |
| 3 | 보건행정길잡이 | 평택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주사 | 안훈희 | |
| 4 | 보건행정길잡이 | 평택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서기 | 조은아 | |
| 5 | 보건행정길잡이 | 김포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주사 | 전호기 | |
| 6 | 보건행정길잡이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주사 | 김애섭 | |
| 7 | 보건행정길잡이 | 안성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주사 | 김현희 | |
| 8 | 보건행정길잡이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주사보 | 임수진 | |
| 9 | 보건행정길잡이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주사보 | 윤성윤 | |
| 10 | 보건행정길잡이 | 용인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주사보 | 우아영 | |
| 11 | 보건행정길잡이 | 부천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서기 | 신민재 | |
| 12 | 보건행정길잡이 | 안산교육지원청 | 지방보건서기보 | 노태현 | |